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일 시 | 2016. 12. 8.(목) 16:00~18: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





# 프로그램

- ▣ 일 시 : 2016. 12. 8.(목) 16:00~18:00
-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
- ▣ 사 회 : 아동청소년인권팀장

시간	내용	발표자
16:00 ~ 16:03	개회	사회자
16:03 ~ 16:10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6:10 ~ 16:20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결과	김형욱 (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16:20 ~ 16:30	학생인권 인식조사 분석결과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6:30 ~ 16:40	학교규칙의 기본권 침해실태	박선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40 ~ 16:50	결론 및 제언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6:50 ~ 17:25	지정 토론	서울특별시 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경기도 교육청 황태륜 학생인권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강민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고유경 수석부회장 (참교육학부모회)
		구정화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17:25 ~ 17:55	종합토론	참석자 모두
17:55 ~	정리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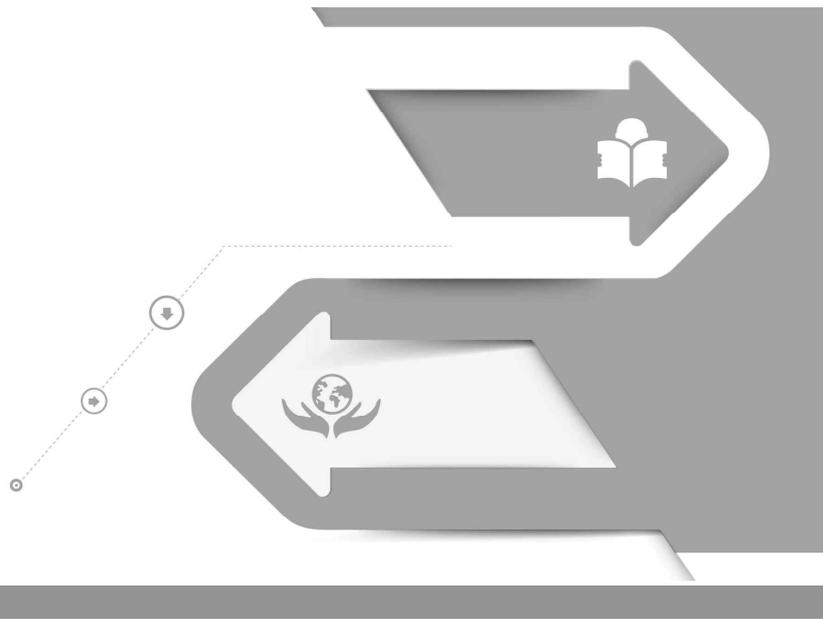
# 목 차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	1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결과 .....	23
김형욱 (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학생인권 인식조사 분석결과 .....	67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교규칙의 기본권 침해실태 .....	79
박선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결론 및 제언 .....	109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정 토론	
서울특별시 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	133
경기도 교육청    황태륜 학생인권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	139
강민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143
고유경 수석부회장 (참교육학부모회) .....	149
구정화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	151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 보장 실태조사 개요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I.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정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학생의 두발·복장의 자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보장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 관련 사안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는 인권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제가 학교현장에서 마련되지 않았거나 운영 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권리 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학교규칙(학칙)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상당 수 학교들이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등의 학교규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규칙 내 학생 권리 보장 관련 항목들도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학교의 학생 인권 제한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일선 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인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련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이 이러한 학교의 학생 규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 규제의 허용 수준에 대한 각 학교 주체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노력은 현재 이들이 도달한 학생인권 의식 수준

을 가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및 학칙에서의 학생의 의견/참여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학생인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리는 세 학교 관련 주체들이 학생인권 및 학교 규제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조사·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이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권 관점에서의 학칙 구성을 위한 기준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종합적 조사의 필요성**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정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학생의 두발·복장의 자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등 보장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학교들이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등의 학교규칙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학생 관련 사안들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 절차는 인권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인권 관련한 학교규칙(학칙)을 분석하며, 학칙 제·개정 등의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변화하는 학교 및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학생인권보장 항목의 추가 필요성**  
 최근의 학교 및 사회 내 문화적 가치와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학생인권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하위 집단의 출현,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SNS를 통한 사회적 소통의 일반화 등은 학생인권보장 영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입시 위주 학교 운영이나 실적 관리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학생 인권 쟁점들과 차별되는 쟁점들을 창출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보도된 최근의 몇몇 학생 인권 관련 사건들은 이러한 실태를 대변하고 있다.

예) 흡연 단속을 위해 교사 앞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토록 요구(조선.com, 2016)  
 예) 교실서 남녀 둘만 이야기 하다 발각될 경우 관련 학생 진술서 작성(중앙일보, 2015)  
 예) 학교 두발 규제에 항의하는 유인물 제작·배포한 학생에게 선동죄 징계(TV조선, 2015)  
 예) 내신 1등급 학생들에게만 경시대회나 경력 관련 대회 참가의 특혜 제공(한겨레신문, 2016)  
 예) 친구들에 왕따 당한 성소수자들 “선생님, 왜 우릴 더럽다 했나요?”라 외치며 호소(한겨레신문, 2013)  
 예)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하길 강요당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신분 노출(장혜림, 김성천, 2009)

이러한 학교 내 사회·문화적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생인권침해 실태 조사연구들은 현대 문화에 특수한 상황들을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교육 행사 혹은 문화 행사 참가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인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사안들은 기존 학생인권보장 실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사안들이었다. 앞서도 논의하였듯 상당수 중·고등학교들이 획일적인 규제나 인권 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마다 그 내용 및 기준도 달라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칙의 구성은 현 사회나 문화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는데, 학교 문화를 보다 잘 반영하는 인권 침해 문항들을 이용한 침해실태조사나 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학칙 구성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여러 학교 주체(학생, 교사, 부모)의 학생인권 관련 인식/태도를 검토한 연구의 부족  
 학생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 학생 인권을 보장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교행정가, 정책 수립자, 판사, 입법가에게 중요한 숙제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인권의 보장은 학교의 학

생 관리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있고 한편 학교의 학생 규제에 대한 옹호는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군의 사람들은 학생의 개인적 권리를 일부 규제할 경우 학생들이 더 잘 배우고 보다 올바르게 발달해 나갈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학교 내 폭력 사건이나 안전 사건 발생 후의 학생 인권의 제한은 ‘학생의 안전’과 ‘학생의 더 나은 발달’이라는 명목 하에 그 명분을 부여받고 있다. 한 예로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교내 총격 사건 이후 학생들의 공격적 혹은 위협적 표현에 대한 “zero tolerance”가 적용되었으며, 학생 소지품 수색, 감시 카메라 설치, 출입문 통제 등의 학생 자유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학생 인권에 대한 학교의 규제 권한 인정 정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시대와 상황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보장 실태에 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10년도 이후 4개의 시도교육청(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 교육청(예, 경기도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학생 인권 보장 실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사나 연구의 대부분은 학생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 및/혹은 교사의 지각을 탐색하거나 이들 보고자 간 지각 차이를 조명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예, 김옥기, 2015; 이명순, 2008). 또한 앞서 기술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도 교육청 조례는 개별 학교의 학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학생 인권 대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 간 갈등이 치열한 학생 인권 영역에 있어 학생, 교사, 부모가 인정하는 학교 규제 권한 정도에 대한 파악은 이들 주체들의 학생인권과 관련한 인식에서의 성장 정도를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학교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 간 학교 규제 권한 허용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는 이런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현 학교 및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학생인권보장 문항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학생인권의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들(학칙)을 분석하며,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의 자유 대 학교의 학생 관리 간 논쟁이 자주 제기되는 인권 항목들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

교의 규제 권한 인정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등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보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3. 선행 연구의 개관

#### 1) 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국내의 관심 및 정책 및 연구 동향

1989년 국제연합에 의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이래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여 왔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이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교육보장 등을 아동·청소년의 권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정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지만, 학생의 표현의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등의 보장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학교들이 획일적인 규제나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등의 학교규칙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는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보장 실태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4개 시도교육청(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과 같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학생 인권 보장 실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사나 연구의 대부분은 학생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 및/혹은 교사의 지각을 탐색하거나 이들 보고자 간 지각 차이를 조명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예, 김옥기, 2015; 이명순, 2008). 학칙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

의 침해 정도를 파악하는 노력 혹은 학칙 분석을 통한 학생의견 존중 및 참여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학생 인권 침해 관련한 연구도 전국 단위로 진행된 경우가 드문 형편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학교의 학생 인권 제한을 인정하는 문구(예,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 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중 한 조항)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일선 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인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 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련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이 실제 이런 조항들에 대 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허용할 수 있는지 그 태도나 인식을 탐색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용 수준에 대한 각 학교 주체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노력은 현재 이들이 도달 한 학생인권 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학생인권보장 실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에 대한 연구를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진행할 필요가 제기된다. 덧붙여 선행 연구 에서 간과되었던 학교규칙(학칙)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침해 및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의 학생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 파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제기된다. 이 같은 학 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보장 현황의 종합적 분석은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유용할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학생인권 대 학교 학생 관리 간 갈등이 첨예한 학생 인권 조항에 있어 각 학교 주체들의 인식하는 학교 규제권 인정선에 대한 탐색은 현 우리 사회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생 인권 기준에 접근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 영역과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실시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에는 그 시행 시기 순으로 경기도 (2010년 10월 시행), 광주(2011년 10월 시행), 서울(2012년 1월 시행), 전북 교육청(2013 년 7월 시행)이 있다. 이들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내 명시된 학생인권 영역과 주요 내 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조례시행 지역 교육청(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의  
학생인권조례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 영역과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피해 학생보호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아간지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등
사생활의 자유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강요 금지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 CCTV 설치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 수렴 - 개인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표현 제한 금지 - 서명이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참여 등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자치 및 참여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존중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적법한 징계절차	-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진술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 등. - 징계내용 공고 금지 -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개선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상담·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 3) 학교규칙 내 인권침해 조항 사례

학교규칙(학칙) 내 학생인권을 침해한 조항들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학교규칙(학칙) 내 학생인권 침해 조항 예시

영역	사례 예시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이후 장학금 제외, 각종 경시대회 학교대표 참여 불가, 학생회 및 학급임원 제한</li> <li>- 정독실 등 이용은 성적우수자 순으로 함.</li> <li>- 신입생 배치고사 결과 석차 백분율 하위 30% 해당 학생 입사 불허</li> <li>- 학생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성적은 전 학기 성적 4개이상 4등급 이상인 자로 제한</li> <li>- 학생회 임원은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을 것</li> <li>-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포상에서 제외함 등.</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차별’은 차이에 제도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위적인 조치다. 차이란 문자 그대로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람마다 다른 취향과 선호, 기질과 특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에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 차이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차별이 생겨난다. 차별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제·격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7),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p. 89)</p> </div>
사생활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개시 1일 전까지 교내 게시판에 선도사항을 공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음.</li> <li>- 징계내용 통보: 중요한 내용인 경우 생활지도협의회회의 심의를 받은 후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음.</li> <li>- 명찰은 셔츠와 교복 위 박음질로 함.</li> <li>- 수업시간 핸드폰 사용 적발 시 1개월 간 압수</li> <li>- 남학생은 앞머리를 당겼을 때 눈에 닿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목을 덮지 않아야 함.</li> <li>- 여학생은 단발머리를 원칙으로 함.</li> <li>- 머리를 묶을 때는 장식이 없는 고무줄 사용</li> <li>- 가르마와 삭발은 해서는 안 됨.</li> <li>- 원색 운동화 착용 금지</li> <li>- 물티슈 또는 클린징 티슈 등으로 닦았을 때 색이 묻어나오는 색조화장 금지 외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렌즈 등 세부 금지 규정</li> <li>- 등에 매는 가방 외 사용 금지</li> <li>- 원색 가방 사용 금지</li> <li>- 양말과 면티는 흰색과 검정색 착용</li> <li>- 원색 외투 착용 금지</li> <li>- 규정 위반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함.</li> <li>- 필요한 경우 소지품 및 용의검사 가능</li> <li>- 기숙사 불시 점검</li> <li>- 흡연 측정을 위한 주기적인 소변검사 실시 등</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7),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p. 43)</p>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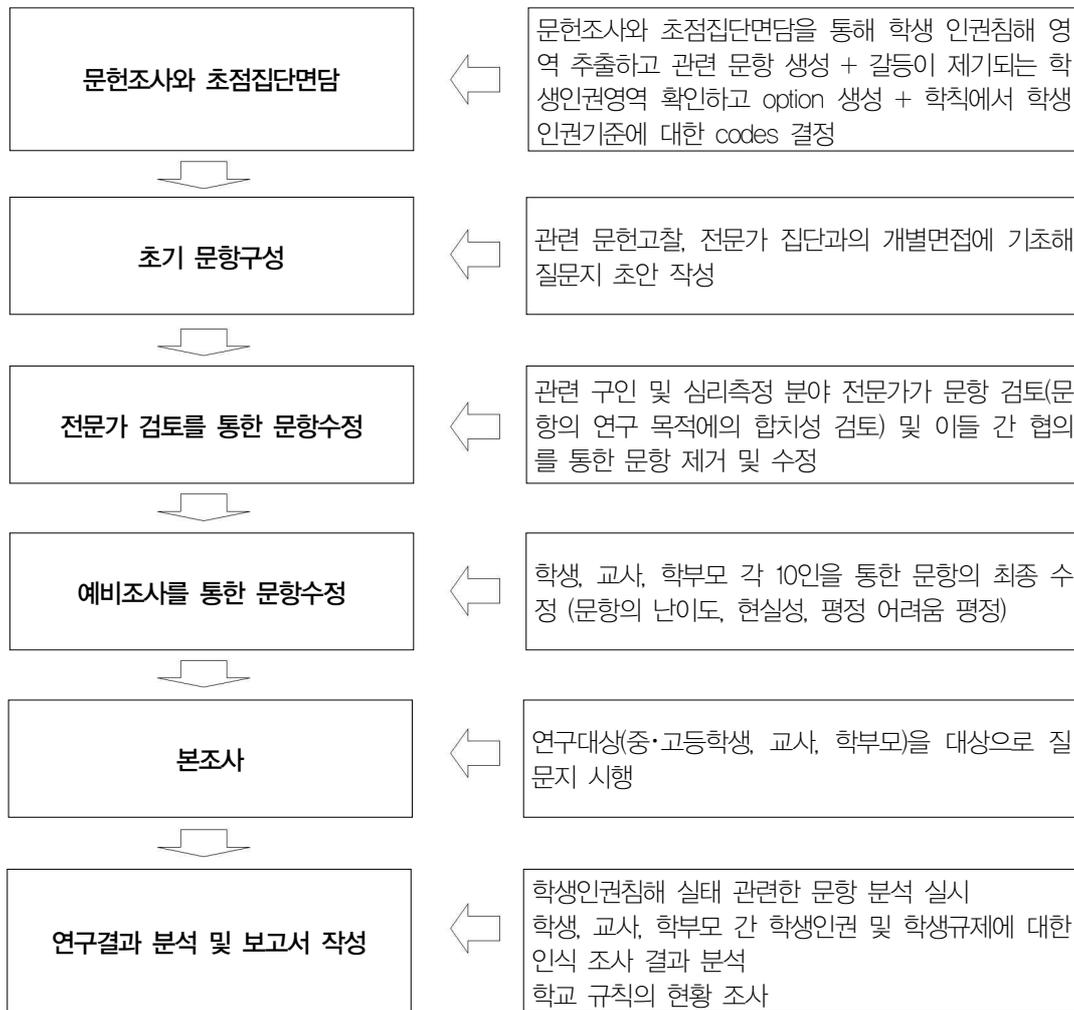
표 이어짐.

영역	사례 예시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물은 반드시 교사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li>- 교내집회 선동 학생 징계</li> <li>- 교외 정치적 활동 시 사전 교사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li>- 학생신분으로 정치 관여 금지</li> <li>- 사회단체, 정치관여 행위 금지</li> <li>- 동아리 또는 서클활동은 반드시 학교장 허가</li> <li>- 집단행동 모의 주동한 자 징계</li> <li>- 학교장 허락없이 외부 행사 출품, 출연 또는 참가 금지</li> <li>-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표현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b></p> <p>1)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들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07진인1146 결정)</p> <p>2) 해직교사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학생들의 피켓 시위 후 피켓 등 시위 물품을 강제로 수거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08진인4868 결정)</p> <p>3) 학교 밖 합법집회(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결정</p> </div>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종교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을 원칙으로 함.</li> <li>- 고사 중 부정행위 방조한 자, 친구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 또는 묵인하거나 동조한 학생, 가출학생의 소재를 고의로 숨긴 학생 징계</li> <li>- 서약서 강제; 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보호자의 확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li> <li>- 특이 사례;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반성문, 서약서 등 제출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b></p> <p>1)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9. 10. 12. 결정)</p> <p>2)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5. 12. 26. 결정)</p> </div>
상벌점제 세부기준 부적절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li> <li>- 가방을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li> <li>-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신발, 머리모양 등</li> <li>-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 소지</li> <li>- 언행이 불손하거나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행위</li> <li>- 남녀 간 풍기문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li> <li>-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li> <li>- 남녀 학생 간 손을 잡는 경우</li> <li>-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li> <li>- 인사를 하지 않거나 불손하게 하는 경우 등</li> </ul>

## 4. 연구 절차 및 방법

### 1) 전체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및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세 학교 주체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및 학교의 규제권 허용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며, 및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학교 규칙(학칙)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을 흐름 차트로 정리한 것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1> 중·고등학생의 학생인권보장 실태,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 학생 규제 허용 정도에 대한 인식, 및 학교 규칙의 현황 조사를 위한 과정 요약

구체적인 세부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선행연구, 국내의 관련법 및 정책, 국제인권기준 및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의 개관
- 조사 설문지 개발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 학생 인권 및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조사)
  - 학생의 인권침해 및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 조사지는 학생용으로만 구성.
  - 학생 인권 및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학생인권보장 영역들로 구성하였다. 인식조사 질문지는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구성.
  - 학생의 인권침해 실태,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의 실태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침해 실태, 학칙 제·개정 등의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학교 내 참여권 보장 실태 정도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질문지의 이론적 틀과 초기 항목 선정. 또한 관련 선행 연구들로부터 학생 인권 대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 간 분쟁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학생 인권 영역 및 기준들을 확인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학교 학생 규제 권한 인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질문지의 초기 문항들을 선정.
  - 선행연구 결과들로부터 유추된 내용들과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 집단 및 학생인권 관련한 전문가 집단과의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설문 문항 보강.
  - 설문의 적합성 및 내용타당도 확보: 도구개발 전문가 및 학생인권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용타당도 확보.
  - 예비연구(pilot study)를 통한 설문문항 어휘의 이해가능성, 설문 문항의 target 집단에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조사 설문지의 최종 문항 확정(부록 1-3 참조)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조사를 위한 codes 마련
  - 국제 학생인권기준, 학생인권조례 및 기타 주요 학생인권 기준들에 근거해 학교 규칙에서의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여부 조사를 위한 codes 마련(4장 참조)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침해 실태 및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조사 조사 결과 분석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 학생 규제 권한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조사
  - 표집된 표본 중·고등학교들의 학칙을 검토, code의 여부를 예/아니오로 coding
  -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위해 일부 규칙은 서술식으로 저장
- 연구 결과의 교육적, 법적, 정책적 함의 및 활용 방안 논의
- 최종 보고서 작성

## 2) 연구방법

- 표집 방법 및 대상:
  - 학생인권침해 실태 조사:

학생인권침해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표집 방법으로 층화표집법(stratified sampling method)과 군집표집법(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층화표집법은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 근거해 그 비율에 맞게 표본 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단순 무작위 추출법보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 더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을 대표하는 집단의 선정을 위해 학생유형(중학생, 고등학생), 지역(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총 17개 지역), 학교유형(중학교는 국공립중 대 사립중; 고등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을 층으로 하여 연구 참가 학생들을 표집하였다.

지역에 따른 연구 참가 학생 수를 할당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2016년도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표 1-1〉와 〈표 1-2〉 참고),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구간 95%와 표본 오차  $\pm 2\%$  범위에서 각 집단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중학생은 2397명(총 1,457,490명에 대한 95% 신뢰 구간, 표본오차  $\pm 2\%$ 에서의 최소 필요 학생 수), 고등학생은 2398명(총 1,763,564명에 대한 95% 신뢰구간, 표본오차  $\pm 2\%$ 에서의 최소 필요 학생 수)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표집될 전체 학생 수를 5500명으로 선정하고, 중학생에게는 해당 구성비 45%에 해당하는 2500명(1,457,490명/3,221,054명  $\times 100=45\%$ ), 고등학생에게는 해당 구성비 55%에 해당하는 3000명(1,763,564명/3,221,054명  $\times 100=55\%$ )을 할당하였다.

개개 학생을 무선표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유층표집법과 함께 군집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즉 학교를 군집 단위로 하여 각 학교당 20~30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에 따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구성비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구성비는 〈표 1-1〉과 〈표 1-2〉에 제시된 정보에 기초해 결정하였다. 표집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의 할당비율은 3:1,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의 할당비율은 3:1:1:1로 단순화시켜 할당하였다. 지역에 따른 표집될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전국 중·고등학교(2016년도 기준 중학교는 3232개, 고등학교는 2308개)를 대상으로 지역과 학교유형을 단위로 하여 할당된 수만큼의 학교를 무선표집하였다. 각 지역별 그리고 각 학교유형별 목록에 기초하여 해당 목록에서 배당된 수의 학교를 무선 표집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선정하였다. 중학교는 최소 4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최소 6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각 학교 군집으로부터 20~30명의 학생을 추출

하여 설문을 완성토록 하는 것이 초기 설문 자료 수집의 목적이었다.

-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
  - ▷ 학생 표본: 학생인권 침해실태 조사에 참가한 중·고등학생 (학교당 20~30명씩)
  - ▷ 학부모 표본: 표집된 학교 학생들의 부모에게 설문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교사 표본: 참가 중·고등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교사 (학교당 5명씩)에게 설문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1〉 2016 전국 중학생 수

(출처: <http://kess.chedi.re.kr/index> 교육통계서비스)

지역	국립학교 중학생수	사립학교 중학생수	중학생수	%
강원	39,156	4,843	43,999	3%
경기	344,724	36,358	381,082	26%
경남	76,393	23,008	99,401	7%
경북	48,396	22,072	70,468	5%
광주	36,729	14,782	51,511	4%
대구	53,777	20,148	73,925	5%
대전	42,391	5,255	47,646	3%
부산	71,438	15,212	86,650	6%
서울	180,634	59,278	239,912	16%
세종	7,444	0	7,444	1%
울산	33,444	1,899	35,343	2%
인천	78,638	4,255	82,893	6%
전남	43,533	9,648	53,181	4%
전북	39,972	16,951	56,923	4%
제주	17,050	3,579	20,629	1%
충북	40,608	5,679	46,287	3%
충남	48,657	11,539	60,196	4%
총합(%)	1,202,984(83%)	254,506(17%)	1,457,490(100%)	100%

〈표 1-2〉 2016 전국 고등학생 수

(출처: <http://kess.kedi.re.kr/index> 교육통계서비스)

지역	일반고 학생수	자율고 학생수	특성화고 학생수	특목고 학생수	고등학교 학생수	%
강원	42,218	461	9,190	1,647	53,516	3%
경기	360,835	11,736	55,415	12,333	440,319	25%
경남	91,325	8,240	15,201	878	115,644	7%
경북	59,972	8,149	16,416	3,919	88,456	5%
광주	48,373	3,359	9,354	1,271	62,357	4%
대구	54,753	16,927	16,216	3,963	91,859	5%
대전	36,968	7,969	9,098	3,052	57,087	3%
부산	65,353	10,729	21,993	7,718	105,793	6%
서울	198,374	40,101	47,915	13,166	299,556	17%
세종	4,924	600	453	486	6,463	0%
울산	31,535	3,020	7,504	2,499	44,558	3%
인천	66,037	5,801	2,0841	3,860	96,539	5%
전남	40,758	6,665	16,966	2,584	66,973	4%
전북	51,279	2,945	26,166	3,142	83,532	5%
제주	17,929	688	3,922	397	22,936	1%
충남	51,901	5,999	12,516	2,623	73,039	4%
충북	33,574	4,721	1,4504	2,138	54,937	3%
총합	1,236,108	138,110	303,670	65,676	1,763,564	100%
비율	71%	8%	17%	4%	100%	

〈표 1-3〉 전체 학생 수 기준 지역별 표본 배당

지역	구성비	중학생표본 배당 학생수	표집된 중학교수	고등학생표본 배당 학생수	표집된 고등학교수
강원	3%	75	4	90	6
경기	26%	650	33	780	39
경남	7%	175	9	210	11
경북	5%	125	7	150	8
광주	4%	100	5	120	6
대구	5%	125	7	150	8
대전	3%	75	4	90	6
부산	6%	150	8	180	9
서울	16%	400	20	480	24
세종	1%	25	4	30	6
울산	2%	50	4	60	6
인천	6%	150	8	240	12
전남	4%	100	5	120	6
전북	4%	100	5	120	6
제주	1%	25	4	30	6
충남	3%	75	4	90	6
충북	4%	100	5	120	6
총합	100%	2500명	136개교	3000명	170개교

주. 지역별 배당된 학교 수에서 중학교의 경우 국공립:사립의 비율이 3:1이 되도록,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목고의 비율이 3:1:1:1이 되도록 학교를 무선표집하였음; 비율이 남는 경우 남는 수는 중학교의 경우 국공립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고에 배당되도록 배정하였음.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조사:

- ▷ 전국 중·고등학교(2016년도 기준 중학교는 3232개, 고등학교는 2308개)를 대상으로 지역(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총 17개 지역), 학교유형(중학교는 국공립중 대 사립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앞서의 실태나 인식조사에서의 학교 유형보다 더 세분화시켜 공립일반고, 사립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전문계고, 특목고의 6개로 구분)을 단위로 각 단위에 해당하는 학교를

하나씩 표집하였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는 34개의 cell(17개 지역×2개 학교 유형)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102개의 cell(17개 지역×6개 학교 유형)이 만들어졌다. 각 cell에 해당하는 학교는 해당 지역, 해당 학교 유형 pool로부터 각각 무선표집되었다. 선정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들 학교의 학칙을 분석하였다. 학칙은 학교알리미(<http://schoolinfo.go.kr>)와 필요한 경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집하였다.

○ 연구절차 및 연구 참가자 특징:

큰 표집 대상 수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표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학생인권 침해실태와 학생인권 에 대한 인식조사는 주로 on-line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on-line 설문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off-line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한양대학교 IRB에 연구서를 제출하고 연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인식조사의 설문 완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들에 발송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는 각각 서로 다른 URL 주소를 부여받았다. 해당 URL 주소에 접속하면 연구에 대한 소개와 연구 참가 동의를 구하는 화면이 뜨고 여기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설문 문항들이 제시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문항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교내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 완성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한 예외적 학교들에 한해(총 3개 학교) paper-and-pencil 설문지를 활용한 off-line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생용의 경우 10분~15분, 학부모용과 교사용의 경우 5분~7분이었다.

설문은 2016년 8월 10일~10월 28일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참가는 중학생의 경우 총 2616명, 고등학생의 경우 총 3484명이 참가하였고 이들은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연구와 인식 조사 연구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식 조사의 경우,

학부모 총 1839명, 교사 총 842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On-line 설문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접속시간으로 개인을 구분) 연구에 참가한 학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제공하지 않았다.

전국 지역에 따른 연구 참가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정보가 아래의 <표 1-4>, <표 1-5>,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학부모 참가자의 경우 부모(혹은 주양육자)의 평균 연령은 45.61( $SD=4.20$ )이었고 교사 참가자의 경우 교사의 평균 연령은 38.70( $SD= 9.48$ ; 22세~63세 범위)이었다. 또한 교사 응답자 중 평교사는 835명(99.2%), 학교행정자는 7명(0.8%)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4> 성별과 조례시행 여부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수와 비율

단위: 명(%)

		학생 응답자		Total (세로구획내 %)
		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남자	1332 (50.9%)	1882 (54.0%)	3214 (52.7%)
	여자	1284 (49.1%)	1602 (46.0%)	2886 (47.3%)
Total		2616 (42.9%)	3484 (57.1%)	6100 (100.0%)
조례시행	시행지역	1320 (50.5%)	1593 (45.7%)	2913 (47.8%)
여부	비시행지역	1296 (49.5%)	1891 (54.3%)	3187 (52.2%)
Total		2616 (42.9%)	3484 (57.1%)	6100 (100.0%)

<표 1-5> 응답자 별 해당 학교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가자의 수와 비율

단위: 명(%)

		응답자			
		중학생 (%)	고등학생 (%)	학부모 (%)	교사 (%)
학교 유형	공립중학교	1635 (62.5%)	—	524 (28.5%)	193 (22.9%)
	사립중학교	981 (37.5%)	—	425 (23.1%)	165 (19.6%)
	일반고	—	2059 (59.1%)	468 (25.5%)	222 (26.4%)
	자율고	—	638 (18.3%)	251 (13.7%)	122 (14.5%)
	특성화고	—	490 (14.1%)	71 (3.9%)	87 (10.3%)
	특목고	—	297 (8.5%)	100 (5.4%)	53 (6.3%)
	Total	2616 (100.0%)	3484 (100.0%)	1839 (100.0%)	842 (100.0%)

〈표 1-6〉 지역별 연구 참가자의 수와 비율

단위: 명(%)

	중학생(%)	고등학생(%)	총학생(%)	학부모(%)	교사(%)
강원	64 (2.4%)	123 (3.5%)	187 (3.1%)	24 (1.3%)	36 (4.3%)
경기	606 (23.2%)	665 (19.1%)	1271 (20.8%)	395 (21.5%)	179 (21.3%)
경남	109 (4.2%)	282 (8.1%)	391 (6.4%)	34 (1.8%)	35 (4.2%)
경북	68 (2.6%)	105 (3.0%)	173 (2.8%)	37 (2.0%)	13 (1.5%)
광주	84 (3.2%)	162 (4.6%)	246 (4.0%)	36 (2.0%)	33 (3.9%)
대구	187 (7.1%)	129 (3.7%)	316 (5.2%)	167 (9.1%)	40 (4.8%)
대전	70 (2.7%)	139 (4.0%)	209 (3.4%)	49 (2.7%)	37 (4.4%)
부산	96 (3.7%)	200 (5.7%)	296 (4.9%)	63 (3.4%)	40 (4.8%)
서울	545 (20.8%)	588 (16.9%)	1133 (18.6%)	421 (22.9%)	160 (19.0%)
세종	42 (1.6%)	62 (1.8%)	104 (1.7%)	84 (4.6%)	34 (4.0%)
울산	102 (3.9%)	94 (2.7%)	196 (3.2%)	150 (8.2%)	27 (3.2%)
인천	143 (5.5%)	180 (5.2%)	323 (5.3%)	92 (5.0%)	20 (2.4%)
전남	84 (3.2%)	179 (5.1%)	263 (4.3%)	44 (2.4%)	27 (3.2%)
전북	85 (3.2%)	178 (5.1%)	263 (4.3%)	58 (3.2%)	27 (3.2%)
제주	118 (4.5%)	94 (2.7%)	212 (3.5%)	20 (1.1%)	39 (4.5%)
충남	98 (3.7%)	156 (4.5%)	254 (4.2%)	96 (5.2%)	58 (6.9%)
충북	115 (4.4%)	148 (4.2%)	263 (4.3%)	69 (3.8%)	37 (4.4%)
Total	2616(100.0%)	3484(100.0%)	6100 (100.0%)	1839(100%)	842 (100%)

지역

○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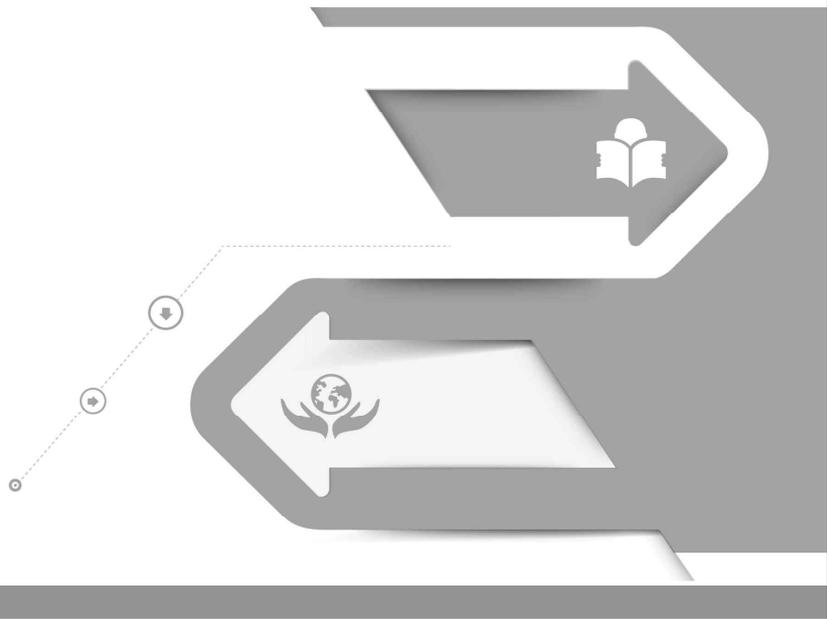
- 학생인권 침해실태의 분석은 학교급(중, 고), 학교유형(중학교: 국공립중 대 사립중; 고등학교: 일반고 대 자율고 대 특성화고 대 특목고), 조례시행여부(조례 대 비조례)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분석은 응답자(중학생, 고등학생, 전체학생, 학부모, 교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와 %에 대한 통계를 얻고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의 유사성 검증을 위해  $\chi^2$  통계분석(집단 간 동질성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통계 결과는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이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조사의 경우, 코드(code) 유무에 대한 빈도 분석과 내용 분석이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전체학교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코드에 해당하는 학칙 조항의 예를 제시하였다.

#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결과

김형욱 (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결과

김형욱 (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및 학생인권 침해 실태 조사는 중학생 2612명, 고등학생 2484명, 총 60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침해 설문지(부록 1 참고)를 주요 내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및 학생인권 침해 조사지의 주요 영역 별 문항 구성

주요 영역	번호	항목
1. 학생권리보장 관련	1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2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의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4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5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6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7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건(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8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9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2. 차별경험 관련	10-1	학교성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10-2	외모/생김새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10-3	가정환경(예, 저소득층가정, 이혼가정, 한부모가정)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10-4	학년/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예, 고학년에 식사나 독서실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는 경우)

주요 영역	번호	항목
	10-5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10-6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10-7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10-8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10-9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3. 체벌 등의 경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관련	11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12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14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15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22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 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4. 적법한 상·벌점제 운영 관련	13-1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Y/ N
	13-2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5.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사생활의 자유) 관련	17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18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을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25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정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6.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관련	20-1	두발의 길이나 모양을 제한합니까?
	20-2	교복 외의 점퍼 착용을 제한합니까?
	20-3	면티나 양말 색깔을 제한합니까?
	20-4	치마나 바지의 길이나 폭을 제한합니까?
	20-5	화장을 제한하거나 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을 제한합니까?
	20-6	수업 외 시간 동안(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기숙사 생활 동안) 핸드폰 사용을 제한합니까?
7. 사상, 양심의 자유 관련	21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8. 학생의 학습권, 교육에 대한 선택권, 휴식권 관련	16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Y/ N
	23-2	'예'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24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26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인권 침해 실태 조사의 분석은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빈도분석은 각 문항에 대해 진행하였고, 응답자별(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유형별(중학교의 경우 공립중, 사립중;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자율형고, 특목고, 특성화고), 그리고 조례시행여부별(조례시행, 조례비시행지역)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의 유사성 검증을 위해  $\chi^2$  통계분석(집단 간 동질성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통계 결과는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이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2-1. 학생권리보장 관련

학교규칙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85.4%, 고등학생은 84.2%였다. 이것을 중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85.0%, 사립중학교는 86.1%가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88.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일반고가 8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규칙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87.7%, 조례지역은 81.4%가 본 적이 있다고 답하여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중학생은 71.3%, 고등학생은 54.4%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육경험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45.6%가 학생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중학교는 72.6%, 사립중학교는 69.2%로 공립중학교의 비율이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0.4%로 가장 높았으며, 특목고가 4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이 60.6%, 조례지역이 62.8%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학생은 74.3%, 고등학생은 75.1%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전용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25.4%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75.0%, 사립중학교는 73.1%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자율형고가 8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는 7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조례지역은 78.7%, 비조례지역은 71.2%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74.9%, 고등학생은 66.1%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중학생은 25.1%, 고등학생은 33.9%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75.7%, 사립중학교는 73.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자율형고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70.3%, 조례지역은 69.4%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학생회가 주관하는 대의원회의 개최여부와 관련하여 중학생은 84.9%, 고등학생은 80.7%가 개최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전체 중·고등학생 17.5%는 대의원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중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중학교는 85.4%, 사립중학교는 84.0%가 개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학교유형 중에는 자율형고는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는 7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83.4%, 조례지역은 81.6%로 나타났다.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9.4%, 고등학생은 39.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8.7%, 사립중학교는 30.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34.3%, 조례지역은 35.6%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비율도 전체 34.5%로 나타났다.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30.9%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2.1%, 사립중학교는 20.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64.4%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26.1%, 조례지역은 27.6%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하여 지역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출마 또는 활동제한 경험이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학생은 19.5%, 고등학생은 26.8%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8.4%, 사립중학교는 21.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26.4%, 조례지역은 20.7%로 비조례지역의 제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4.3%, 고등학생은 18.7%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4.4%, 사립중학교는 14.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서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16.9%, 조례지역은 16.6%가 그렇다 라고 답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관련 문항들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단위: 명(%)

$x^2 = 1.74$	1.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Total	
	No	Yes		
응답자	중학생	381 (14.6%)	2231 (85.4%)	2612 (100.0%)
	고등학생	551 (15.8%)	2933 (84.2%)	3484 (100.0%)
Total		932 (15.3%)	5164 (84.7%)	6096 (100.0%)
$x^2 = 181.04^{***}$	2.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Total	
	No	Yes		
응답자	중학생	749 (28.7%)	1863 (71.3%)	2612 (100.0%)
	고등학생	1589 (45.6%)	1895 (54.4%)	3484 (100.0%)
Total		2338 (38.4%)	3758 (61.6%)	6096 (100.0%)
$x^2 = .48$	3.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Total	
	No	Yes		
응답자	중학생	671 (25.7%)	1941 (74.3%)	2612 (100.0%)
	고등학생	551 (15.8%)	2933 (84.2%)	3484 (100.0%)
Total		868 (24.9%)	2616 (75.1%)	3484 (100.0%)
$x^2 = 54.41^{***}$	4.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Total	
	No	Yes		
응답자	중학생	657 (25.1%)	1959 (74.9%)	2616 (100.0%)
	고등학생	1180 (33.9%)	2304 (66.1%)	3484 (100.0%)
Total		1837 (30.1%)	4263 (69.9%)	6100 (100.0%)
$x^2 = 18.17^{***}$	5.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395 (15.1%)	2221 (84.9%)	2616 (100.0%)
	고등학생	672 (19.3%)	2812 (80.7%)	3484 (100.0%)
Total		1067 (17.5%)	5033 (82.5%)	6100 (100.0%)
$x^2 = 62.31^{***}$	6.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768 (29.4%)	1848 (70.6%)	2616 (100.0%)
	고등학생	1362 (39.1%)	2122 (60.9%)	3484 (100.0%)
Total		2130 (34.9%)	3970 (65.1%)	6100 (100.0%)
$x^2 = 67.67^{***}$	7.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전(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561 (21.5%)	2054 (78.5%)	2615 (100.0%)
	고등학생	1076 (30.9%)	2408 (69.1%)	3484 (100.0%)
Total		1637 (26.8%)	4462 (73.2%)	6099 (100.0%)
$x^2 = 44.71^{***}$	8.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2107 (80.5%)	509 (19.5%)	2616 (100.0%)
	고등학생	2550 (73.2%)	934 (26.8%)	3484 (100.0%)
Total		4657 (76.3%)	1443 (23.7%)	6100 (100.0%)
$x^2 = 20.28^{***}$	9.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374 (14.3%)	2241 (85.7%)	2615 (100.0%)
	고등학생	650 (18.7%)	2834 (81.3%)	3484 (100.0%)
Total		1024 (16.8%)	5075 (83.2%)	6099 (100.0%)

〈표 2-1-2〉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관련 문항들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교유형별)

단위: 명(%)

		1.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 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Total
		No	Yes	
학교유형 $x^2=0.56$	공립중	245 (15.0%)	1390 (85.0%)	1635 (100.0%)
	사립중	136 (13.9%)	841 (86.1%)	977 (100.0%)
Total		381 (14.6%)	2231 (85.4%)	2612 (100.0%)
학교유형 $x^2=11.45^*$	일반고	357 (17.3%)	1702 (82.7%)	2059 (100.0%)
	자율형고	98 (15.4%)	540 (84.6%)	638 (100.0%)
	특성학교	59 (12.0%)	431 (88.0%)	490 (100.0%)
	특목고	37 (12.5%)	260 (87.5%)	297 (100.0%)
Total		551 (15.8%)	2933 (84.2%)	3484 (100.0%)
		2.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Total
		No	Yes	
학교유형 $x^2=3.47^*$	공립중	448 (27.4%)	1187 (72.6%)	1635 (100.0%)
	사립중	301 (30.8%)	676 (69.2%)	977 (100.0%)
Total		749 (28.7%)	1863 (71.3%)	2612 (100.0%)
학교유형 $x^2=17.94^{***}$	일반고	976 (47.4%)	1083 (52.6%)	2059 (100.0%)
	자율형고	266 (41.7%)	372 (58.3%)	638 (100.0%)
	특성학교	194 (39.6%)	296 (60.4%)	490 (100.0%)
	특목고	153 (51.5%)	144 (48.5%)	297 (100.0%)
Total		1589 (45.6%)	1895 (54.4%)	3484 (100.0%)
		3.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Total
		No	Yes	
학교유형 $x^2=1.24$	공립중	408 (25.0%)	1227 (75.0%)	1635 (100.0%)
	사립중	263 (26.9%)	714 (73.1%)	977 (100.0%)
Total		671 (25.7%)	1941 (74.3%)	2612 (100.0%)
학교유형 $x^2=37.34^{***}$	일반고	562 (27.3%)	1497 (72.7%)	2059 (100.0%)
	자율형고	100 (15.7%)	538 (84.3%)	638 (100.0%)
	특성학교	135 (27.6%)	355 (72.4%)	490 (100.0%)
	특목고	71 (23.9%)	226 (76.1%)	297 (100.0%)
Total		868 (24.9%)	2616 (75.1%)	3484 (100.0%)
		4.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x^2=1.38$	공립중	398 (24.3%)	1237 (75.7%)	1635 (100.0%)
	사립중	259 (26.4%)	722 (73.6%)	981 (100.0%)
Total		657 (25.1%)	1959 (74.9%)	2612 (100.0%)
학교유형 $x^2=11.14^*$	일반고	713 (34.6%)	1346 (65.4%)	2059 (100.0%)
	자율형고	184 (28.8%)	454 (71.2%)	638 (100.0%)
	특성학교	185 (37.8%)	305 (62.2%)	490 (100.0%)
	특목고	98 (33.0%)	199 (67.0%)	297 (100.0%)
Total		1180 (33.9%)	2304 (66.1%)	3484 (100.0%)
		5.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x^2=1.00$	공립중	238 (14.6%)	1397 (85.4%)	1635 (100.0%)
	사립중	157 (16.0%)	824 (84.0%)	981 (100.0%)
Total		395 (15.1%)	2221 (84.9%)	2616 (100.0%)
학교유형 $x^2=25.59^{***}$	일반고	416 (20.2%)	1643 (79.8%)	2059 (100.0%)
	자율형고	84 (13.2%)	554 (86.8%)	638 (100.0%)
	특성학교	120 (24.5%)	370 (75.5%)	490 (100.0%)
	특목고	52 (17.5%)	245 (82.5%)	297 (100.0%)
Total		672 (19.3%)	2812 (80.7%)	3484 (100.0%)

표 이어짐		6.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x^2=0.79$	공립중	470 (28.7%)	1165 (71.3%)	1635 (100.0%)
	사립중	298 (30.4%)	683 (69.6%)	981 (100.0%)
Total		768 (29.4%)	1848 (70.6%)	2616 (100.0%)
학교유형 $x^2=8.45^*$	일반고	801 (38.9%)	1258 (61.1%)	2059 (100.0%)
	자율형고	228 (35.7%)	410 (64.3%)	638 (100.0%)
	특성화고	198 (40.4%)	292 (59.6%)	490 (100.0%)
	특목고	135 (45.5%)	162 (54.5%)	297 (100.0%)
Total		1362 (39.1%)	2122 (60.9%)	3484 (100.0%)
		7.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전(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x^2=1.06$	공립중	361 (22.1%)	1273 (77.9%)	1634 (100.0%)
	사립중	200 (20.4%)	781 (79.6%)	981 (100.0%)
Total		561 (21.5%)	2054 (78.5%)	2615 (100.0%)
학교유형 $x^2=8.51^*$	일반고	607 (29.5%)	1452 (70.5%)	2059 (100.0%)
	자율형고	227 (35.6%)	411 (64.4%)	638 (100.0%)
	특성화고	150 (30.6%)	340 (69.4%)	490 (100.0%)
	특목고	92 (31.0%)	205 (69.0%)	297 (100.0%)
Total		1076 (30.9%)	2408 (69.1%)	3484 (100.0%)
		8.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x^2=3.05$	공립중	1334 (81.6%)	301 (18.4%)	1635 (100.0%)
	사립중	773 (78.8%)	208 (21.2%)	981 (100.0%)
Total		2107 (80.5%)	509 (19.5%)	2616 (100.0%)
학교유형 $x^2=39.76^{***}$	일반고	1442 (70.0%)	617 (30.0%)	2059 (100.0%)
	자율형고	495 (77.6%)	143 (22.4%)	638 (100.0%)
	특성화고	359 (73.3%)	131 (26.7%)	490 (100.0%)
	특목고	254 (85.5%)	43 (14.5%)	297 (100.0%)
Total		2550 (73.2%)	934 (26.8%)	3484 (100.0%)
		9.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x^2=0.02$	공립중	235 (14.4%)	1400 (85.6%)	1635 (100.0%)
	사립중	139 (14.2%)	841 (85.8%)	980 (100.0%)
Total		374 (14.3%)	2241 (85.7%)	2615 (100.0%)
학교유형 $x^2=3.15$	일반고	395 (19.2%)	1664 (80.8%)	2059 (100.0%)
	자율형고	106 (16.6%)	532 (83.4%)	638 (100.0%)
	특성화고	98 (20.0%)	392 (80.0%)	490 (100.0%)
	특목고	51 (17.2%)	246 (82.8%)	297 (100.0%)
Total		650 (18.7%)	2834 (81.3%)	3484 (100.0%)

〈표 2-1-3〉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관련 문항들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x^2=47.41^{***}$	1.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Total	
	No	Yes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390 (12.3%)	2793 (87.7%)	3183 (100.0%)
	조례지역	542 (18.6%)	2371 (81.4%)	2913 (100.0%)
Total		932 (15.3%)	5164 (84.7%)	6096 (100.0%)
$x^2=3.26$	2.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Total	
	No	Yes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1255 (39.4%)	1928 (60.6%)	3183 (100.0%)
	조례지역	1083 (37.2%)	1830 (62.8%)	2913 (100.0%)
Total		2338 (38.4%)	3758 (61.6%)	6096 (100.0%)
$x^2=45.61^{***}$	3.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Total	
	No	Yes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918 (28.8%)	2265 (71.2%)	3183 (100.0%)
	조례지역	621 (21.3%)	2292 (78.7%)	2913 (100.0%)
Total		1539 (25.2%)	4557 (74.8%)	6096 (100.0%)
$x^2=0.51$	4.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947 (29.7%)	2240 (70.3%)	3187 (100.0%)
	조례지역	890 (30.6%)	2023 (69.4%)	2913 (100.0%)
Total		1837 (30.1%)	4263 (69.9%)	6100 (100.0%)
$x^2=3.43$	5.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530 (16.6%)	2657 (83.4%)	3187 (100.0%)
	조례지역	537 (18.4%)	2376 (81.6%)	2913 (100.0%)
Total		1067 (17.5%)	5033 (82.5%)	6100 (100.0%)
$x^2=1.03$	6. 학교는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1094 (34.3%)	2093 (65.7%)	3187 (100.0%)
	조례지역	1036 (35.6%)	1877 (64.4%)	2913 (100.0%)
Total		2130 (34.9%)	3970 (65.1%)	6100 (100.0%)
$x^2=1.79$	7.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전(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832 (26.1%)	2354 (73.9%)	3186 (100.0%)
	조례지역	805 (27.6%)	2108 (72.4%)	2913 (100.0%)
Total		1637 (26.8%)	4462 (73.2%)	6099 (100.0%)
$x^2=27.60^{***}$	8.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346 (73.6%)	841 (26.4%)	3187 (100.0%)
	조례지역	2311 (79.3%)	602 (20.7%)	2913 (100.0%)
Total		4657 (76.3%)	1443 (23.7%)	6100 (100.0%)
$x^2=0.08$	9.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539 (16.9%)	2647 (83.1%)	3186 (100.0%)
	조례지역	485 (16.6%)	2428 (83.4%)	2913 (100.0%)
Total		1024 (16.8%)	5075 (83.2%)	6099 (100.0%)

## 2-2. 차별 경험 관련

차별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차별유형별로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 고등학생 모두에서 학년/나이로 인한 차별,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외모/생김새로 인한 차별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이들 차별 영역에 대해 중학생의 각각 23.9%, 19.9%, 10.5%, 9.4%가, 고등학생의 각각 45.1%, 36.7%, 14.7%, 10.9%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수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년/나이, 학교성적,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의 유무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 높은 그렇다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외모/생김새로 인한 차별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 간 유의한 차이 없이 약 10% 수준이 그렇다라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중학생은 장애 4.3%, 성적지향 4.2%, 가정환경 3.5%, 종교 2.7%, 타국적/다문화 2.4%로 순으로, 고등학생은 성적지향 6.3%, 종교 5.7%, 장애 4.9%, 가정환경 4.7%, 타국적/다문화 3.1%로 순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두 학생 집단 모두에서 타국적/다문화로 인한 차별 경험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게 보고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에서는 성적지향이나 종교로 인한 차별 경험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의 경우에는 학년/나이로 인한 차별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성적이 17.2%, 성별이 13.3%로 나타났다. 이외에 외모/생김새는 9.7%, 장애는 4.6%, 성적지향은 4.0%, 가정환경은 3.5%, 타국적/다문화는 2.4%, 종교는 2.3%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년/나이가 22.0%로 높게 나왔다. 이 외에 외모/생김새는 9.0%, 성별은 5.8%, 성적지향은 4.6%, 장애는 3.7%, 가정환경은 3.4%, 종교는 3.3%, 타국적/다문화는 2.3%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성적에 의한 차별은 일반고가 40.1%, 외모/생김새에 의한 차별은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2.0%, 가정환경에 의한 차별은 일반고가 5.1%,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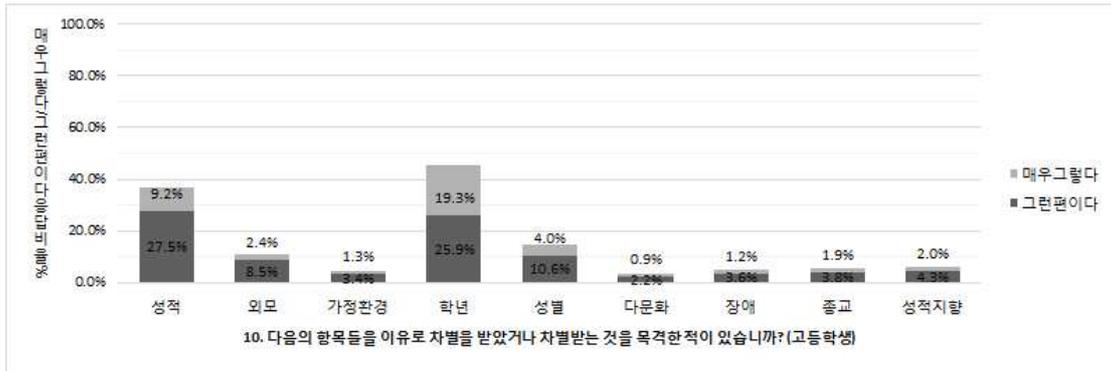
나이에 의한 차별은 특목고가 59.9%, 성별에 의한 차별은 특목고가 17.5%, 타국적/다문화에 의한 차별은 일반고와 특성화고/전문계고가 3.3%, 장애에 의한 차별은 일반고가 5.5%, 종교에 의한 차별은 자율형고가 7.2%,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자율형고가 8.3%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은 모든 학교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일반고 44.1%, 자율형고 45.8%, 특성화고/전문계고 39.6%, 특목고 59.9%)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이 비조례지역(34.7%)이나 조례지역(37.5%)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에 의한 차별도 비조례지역(31.3%)이나 조례지역(27.6%) 모두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표 2-2-1〉 차별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단위: 명(%)

		10.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학교성적 $x^2=204.72$ ***	중학생	2095 (80.1%)	519 (19.9%)	2614 (100.0%)
	고등학생	2204 (63.3%)	1280 (36.7%)	3484 (100.0%)
	Total	4299 (70.5%)	1799 (29.5%)	6098 (100.0%)
②외모/생김새 $x^2=3.78$	중학생	2369 (90.6%)	246 (9.4%)	2615 (100.0%)
	고등학생	3103 (89.1%)	381 (10.9%)	3484 (100.0%)
	Total	5472 (89.7%)	627 (10.3%)	6099 (100.0%)
③가정환경(저소득, 이혼한 부모가정) $x^2=6.62^*$	중학생	2524 (96.5%)	91 (3.5%)	2615 (100.0%)
	고등학생	3320 (95.3%)	164 (4.7%)	3484 (100.0%)
	Total	5844 (95.8%)	255 (4.2%)	6099 (100.0%)
④학년/나이 $x^2=290.76$ ***	중학생	1989 (76.1%)	626 (23.9%)	2615 (100.0%)
	고등학생	1912 (54.9%)	1572 (45.1%)	3484 (100.0%)
	Total	3901 (64.0%)	2198 (36.0%)	6099 (100.0%)
⑤성별 $x^2=22.93$ ***	중학생	2340 (89.5%)	275 (10.5%)	2615 (100.0%)
	고등학생	2973 (85.3%)	511 (14.7%)	3484 (100.0%)
	Total	5313 (87.1%)	786 (12.9%)	6099 (100.0%)
⑥다른나라/다문화가정 $x^2=3.15$	중학생	2553 (97.6%)	62 (2.4%)	2615 (100.0%)
	고등학생	3375 (96.9%)	109 (3.1%)	3484 (100.0%)
	Total	5928 (97.2%)	171 (2.8%)	6099 (100.0%)
⑦장애 $x^2=1.21$	중학생	2503 (95.7%)	112 (4.3%)	2615 (100.0%)
	고등학생	3314 (95.1%)	170 (4.9%)	3484 (100.0%)
	Total	5817 (95.4%)	282 (4.6%)	6099 (100.0%)
⑧종교 $x^2=33.14$ ***	중학생	2545 (97.3%)	70 (2.7%)	2615 (100.0%)
	고등학생	3284 (94.3%)	200 (5.7%)	3484 (100.0%)
	Total	5829 (95.6%)	270 (4.4%)	6099 (100.0%)
⑨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성향) $x^2=12.16$ ***	중학생	2504 (95.8%)	111 (4.2%)	2615 (100.0%)
	고등학생	3265 (93.7%)	219 (6.3%)	3484 (100.0%)
	Total	5769 (94.6%)	330 (5.4%)	60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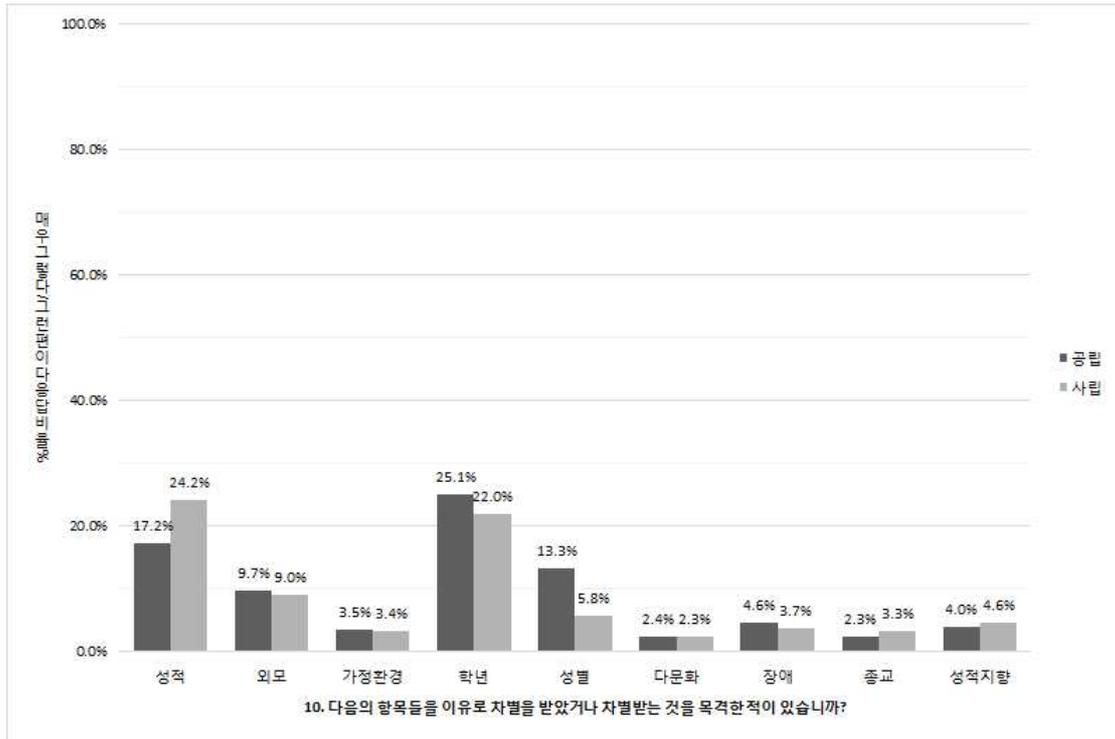


〈그림 2-2-1〉 차별경험(응답자별)

〈표 2-2-2〉 차별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중학교 유형별)

단위: 명(%)

		10.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학교성적 $x^2=18.65^{***}$	공립중	1353 (82.8%)	282 (17.2%)	1635 (100.0%)
	사립중	742 (75.8%)	237 (24.2%)	979 (100.0%)
	Total	2095 (80.1%)	519 (19.9%)	2614 (100.0%)
②외모/생김새 $x^2=0.34$	공립중	1477 (90.3%)	158 (9.7%)	1635 (100.0%)
	사립중	892 (91.0%)	88 (9.0%)	980 (100.0%)
	Total	2369 (90.6%)	246 (9.4%)	2615 (100.0%)
③가정환경(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x^2=0.06$	공립중	1577 (96.5%)	58 (3.5%)	1635 (100.0%)
	사립중	947 (96.6%)	33 (3.4%)	980 (100.0%)
	Total	2524 (96.5%)	91 (3.5%)	2615 (100.0%)
④학년/나이 $x^2=3.10$	공립중	1225 (74.9%)	410 (25.1%)	1635 (100.0%)
	사립중	762 (78.0%)	216 (22.0%)	980 (100.0%)
	Total	1989 (76.1%)	626 (23.9%)	2615 (100.0%)
⑤성별 $x^2=36.79^{***}$	공립중	1417 (86.7%)	218 (13.3%)	1635 (100.0%)
	사립중	923 (94.2%)	57 (5.8%)	980 (100.0%)
	Total	2340 (89.5%)	275 (10.5%)	2615 (100.0%)
⑥다른나라/다문화가정 $x^2=0.00$	공립중	1596 (97.6%)	39 (2.4%)	1635 (100.0%)
	사립중	957 (97.7%)	26 (2.3%)	980 (100.0%)
	Total	2553 (97.6%)	62 (2.4%)	2615 (100.0%)
⑦장애 $x^2=1.42$	공립중	1559 (95.4%)	76 (4.6%)	1635 (100.0%)
	사립중	944 (96.3%)	36 (3.7%)	980 (100.0%)
	Total	2503 (95.7%)	112 (4.3%)	2615 (100.0%)
⑧종교 $x^2=2.08$	공립중	1597 (97.7%)	38 (2.3%)	1635 (100.0%)
	사립중	948 (96.7%)	32 (3.3%)	980 (100.0%)
	Total	2545 (97.3%)	70 (2.7%)	2615 (100.0%)
⑨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성향) $x^2=0.47$	공립중	1569 (96.0%)	66 (4.0%)	1635 (100.0%)
	사립중	935 (95.4%)	45 (4.6%)	980 (100.0%)
	Total	2504 (95.8%)	111 (4.2%)	26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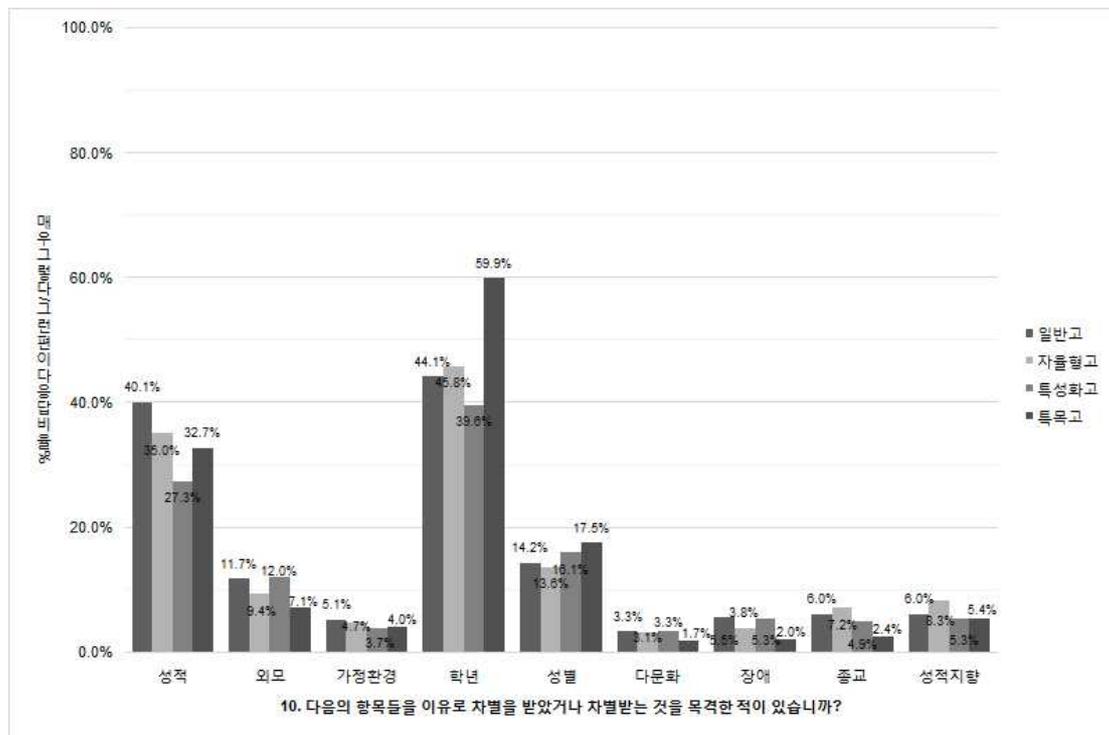
〈그림 2-2-2〉 중학교 유형별 차별경험

〈표 2-2-3〉 차별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고등학교 유형별)

단위: 명(%)

		10.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 학교성적 $x^2=31.71^{***}$	일반고	1233 (59.9%)	826 (40.1%)	2059 (100.0%)
	자율형고	415 (65.0%)	223 (35.0%)	638 (100.0%)
	특성화고	356 (72.7%)	134 (27.3%)	490 (100.0%)
	특목고	200 (67.3%)	97 (32.7%)	297 (100.0%)
	Total	2204 (63.3%)	1280 (36.7%)	3484 (100.0%)
② 외모/생김새 $x^2=7.96^*$	일반고	1818 (88.3%)	241 (11.7%)	2059 (100.0%)
	자율형고	578 (90.6%)	60 (9.4%)	638 (100.0%)
	특성화고	431 (88.0%)	59 (12.0%)	490 (100.0%)
	특목고	276 (92.9%)	21 (7.1%)	297 (100.0%)
	Total	3103 (89.1%)	381 (10.9%)	3484 (100.0%)
③ 가정환경 (저소득,이혼,한부모가정) $x^2=2.00$	일반고	1955 (94.9%)	104 (5.1%)	2059 (100.0%)
	자율형고	608 (95.3%)	30 (4.7%)	638 (100.0%)
	특성화고	472 (96.3%)	18 (3.7%)	490 (100.0%)
	특목고	285 (96.0%)	12 (4.0%)	297 (100.0%)
	Total	3320 (95.3%)	164 (4.7%)	3484 (100.0%)
④ 학년/나이 $x^2=33.34^{***}$	일반고	1151 (55.9%)	908 (44.1%)	2059 (100.0%)
	자율형고	346 (54.2%)	292 (45.8%)	638 (100.0%)
	특성화고	296 (60.4%)	194 (39.6%)	490 (100.0%)
	특목고	119 (40.1%)	178 (59.9%)	297 (100.0%)
	Total	1912 (54.9%)	1572 (45.1%)	3484 (100.0%)
⑤ 성별 $x^2=3.60$	일반고	1766 (85.8%)	293 (14.2%)	2059 (100.0%)
	자율형고	551 (86.4%)	87 (13.6%)	638 (100.0%)
	특성화고	411 (83.9%)	79 (16.1%)	490 (100.0%)
	특목고	245 (82.5%)	52 (17.5%)	297 (100.0%)
	Total	2973 (85.3%)	511 (14.7%)	3484 (100.0%)
⑥ 다른나라/ 다문화가정 $x^2=2.28$	일반고	1991 (96.7%)	68 (3.3%)	2059 (100.0%)
	자율형고	618 (96.9%)	20 (3.1%)	638 (100.0%)
	특성화고	474 (96.7%)	16 (3.3%)	490 (100.0%)
	특목고	292 (98.3%)	5 (1.7%)	297 (100.0%)
	Total	3375 (96.9%)	109 (3.1%)	3484 (100.0%)

⑦장애 $\chi^2=9.06^*$	일반고	1945 (94.5%)	114 (5.5%)	2059 (100.0%)
	자율형고	614 (96.2%)	24 (3.8%)	638 (100.0%)
	특성화고	464 (94.7%)	26 (5.3%)	490 (100.0%)
	특목고	291 (98.0%)	6 (2.0%)	297 (100.0%)
	Total	3314 (95.1%)	170 (4.9%)	3484 (100.0%)
⑧종교 $\chi^2=9.68^*$	일반고	1936 (94.0%)	123 (6.0%)	2059 (100.0%)
	자율형고	592 (92.8%)	46 (7.2%)	638 (100.0%)
	특성화고	466 (95.1%)	24 (4.9%)	490 (100.0%)
	특목고	290 (97.6%)	7 (2.4%)	297 (100.0%)
	Total	3284 (94.3%)	200 (5.7%)	3484 (100.0%)
⑨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성향) $\chi^2=5.87$	일반고	1935 (94.0%)	124 (6.0%)	2059 (100.0%)
	자율형고	585 (91.7%)	53 (8.3%)	638 (100.0%)
	특성화고	464 (94.7%)	26 (5.3%)	490 (100.0%)
	특목고	281 (94.6%)	16 (5.4%)	297 (100.0%)
	Total	3265 (93.7%)	219 (6.3%)	3484 (100.0%)



〈그림 2-2-3〉 고등학교 유형별 차별경험

〈표 2-2-4〉 차별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10.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 학교성적 $x^2=10.05^{**}$	비조례지역	2189 (68.7%)	996 (31.3%)	3185 (100.0%)
	조례지역	2110 (72.4%)	803 (27.6%)	2913 (100.0%)
	Total	4299 (70.5%)	1799 (29.5%)	6098 (100.0%)
② 외모/생김새 $x^2=0.02$	비조례지역	2857 (89.7%)	329 (10.3%)	3186 (100.0%)
	조례지역	2615 (89.8%)	298 (10.2%)	2913 (100.0%)
	Total	5472 (89.7%)	627 (10.3%)	6099 (100.0%)
③ 가정환경(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x^2=2.69$	비조례지역	3040 (95.4%)	146 (4.6%)	3186 (100.0%)
	조례지역	2804 (96.3%)	109 (3.7%)	2913 (100.0%)
	Total	5844 (95.8%)	255 (4.2%)	6099 (100.0%)
④ 학년/나이 $x^2=5.32^*$	비조례지역	2081 (65.3%)	1105 (34.7%)	3186 (100.0%)
	조례지역	1820 (62.5%)	1093 (37.5%)	2913 (100.0%)
	Total	3901 (64.0%)	2198 (36.0%)	6099 (100.0%)
⑤ 성별 $x^2=0.32$	비조례지역	2768 (86.9%)	418 (13.1%)	3186 (100.0%)
	조례지역	2545 (87.4%)	368 (12.6%)	2913 (100.0%)
	Total	5313 (87.1%)	786 (12.9%)	6099 (100.0%)
⑥ 다른나라/다문화가정 $x^2=0.78$	비조례지역	3091 (97.0%)	95 (3.0%)	3186 (100.0%)
	조례지역	2837 (97.4%)	76 (2.6%)	2913 (100.0%)
	Total	5928 (97.2%)	171 (2.8%)	6099 (100.0%)
⑦ 장애 $x^2=0.04$	비조례지역	3037 (95.3%)	149 (4.7%)	3186 (100.0%)
	조례지역	2780 (95.4%)	133 (4.6%)	2913 (100.0%)
	Total	5817 (95.4%)	282 (4.6%)	6099 (100.0%)
⑧ 종교 $x^2=0.01$	비조례지역	3044 (95.5%)	142 (4.5%)	3186 (100.0%)
	조례지역	2785 (95.6%)	128 (4.4%)	2913 (100.0%)
	Total	5829 (95.6%)	270 (4.4%)	6099 (100.0%)
⑨ 성적 지향(동성·양성애) $x^2=4.83^*$	비조례지역	3033 (95.2%)	153 (4.8%)	3186 (100.0%)
	조례지역	2736 (93.9%)	177 (6.1%)	2913 (100.0%)
	Total	5769 (94.6%)	330 (5.4%)	6099 (100.0%)

## 2-3.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험 관련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관련)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9.5%, 고등학생은 27.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5%, 사립중학교는 34.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2.4%, 조례지역은 23.5%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비조례지역 보다 조례지역에서 직접체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5.1%, 고등학생은 36.3%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33.1%, 사립중학교는 38.5%로 나타났다. 직접체벌과 같이 사립중학교에서 간접체벌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40.6%, 조례지역은 30.5%로 직접체벌과 마찬가지로 조례지역에서의 간접체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0.2%, 고등학생은 37.8%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직접 28.2%/간접 35.8%) 또는 언어폭력(34.5%)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9.4%, 사립중학교는 31.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모든 유형 전체 37.8%로 언어폭력 경험이나 목격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5.1%, 조례지역은 33.9%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6.2%, 고등학생은 9.5%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중학교는 5.1%, 사립중

학교는 8.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8.1%, 조례지역은 8.0%로 나타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3%, 고등학생은 33.5%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2%, 사립중학교는 26.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9.3%, 조례지역은 31.6%로 나타났다.

〈표 2-3-1〉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응답자별)

단위: 명(%)

$x^2=4.25^*$	11.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1843 (70.5%)	772 (29.5%)	2615 (100.0%)
	고등학생	2539 (72.9%)	945 (27.1%)	3484 (100.0%)
Total		4382 (71.8%)	1717 (28.2%)	6099 (100.0%)
$x^2=.88$	12.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1696 (64.9%)	918 (35.1%)	2614 (100.0%)
	고등학생	2220 (63.7%)	1264 (36.3%)	3484 (100.0%)
Total		3916 (64.2%)	2182 (35.8%)	6098 (100.0%)
$x^2=38.58^{***}$	14.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1827 (69.8%)	789 (30.2%)	2616 (100.0%)
	고등학생	2167 (62.2%)	1317 (37.8%)	3484 (100.0%)
Total		3994 (65.5%)	2106 (34.5%)	6100 (100.0%)

$x^2=21.13^{***}$		15.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2453 (93.8%)	163 (6.2%)	2616 (100.0%)
	고등학생	3154 (90.5%)	330 (9.5%)	3484 (100.0%)
Total		5607 (91.9%)	493 (8.1%)	6100 (100.0%)

$x^2=36.56^{***}$		22.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688 (26.3%)	1928 (73.7%)	2616 (100.0%)
	고등학생	1167 (33.5%)	2317 (66.5%)	3484 (100.0%)
Total		1855 (30.4%)	4245 (69.6%)	6100 (100.0%)

〈표 2-3-2〉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학교유형별)

단위: 명(%)

		11.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201 (73.5%)	434 (26.5%)	1635 (100.0%)
	사립중	642 (65.5%)	338 (34.5%)	980 (100.0%)
Total		1843 (70.5%)	772 (29.5%)	2615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499 (72.8%)	560 (27.2%)	2059 (100.0%)
	자율형고	424 (66.5%)	214 (33.5%)	638 (100.0%)
	특성화고	350 (71.4%)	140 (28.6%)	490 (100.0%)
	특목고	266 (89.6%)	31 (10.4%)	297 (100.0%)
Total		2539 (72.9%)	945 (27.1%)	3484 (100.0%)

		12.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094 (66.9%)	541 (33.1%)	1635 (100.0%)
	사립중	602 (61.5%)	377 (38.5%)	979 (100.0%)
Total		1696 (64.9%)	918 (35.1%)	2614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275 (61.9%)	784 (38.1%)	2059 (100.0%)
	자율형고	385 (60.3%)	253 (39.7%)	638 (100.0%)
	특성화고	316 (64.5%)	174 (35.5%)	490 (100.0%)
	특목고	244 (82.2%)	53 (17.8%)	297 (100.0%)
Total		2220 (63.7%)	1264 (36.3%)	3484 (100.0%)

		14.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155 (70.6%)	480 (29.4%)	1635 (100.0%)
	사립중	672 (68.5%)	309 (31.5%)	981 (100.0%)
$x^2=1.33$				
Total		1827 (69.8%)	789 (30.2%)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260 (61.2%)	799 (38.8%)	2059 (100.0%)
	자율형고	408 (63.9%)	230 (36.1%)	638 (100.0%)
	특성화고	311 (63.5%)	179 (36.5%)	490 (100.0%)
	특목고	188 (63.3%)	109 (36.7%)	297 (100.0%)
$x^2=2.20$				
Total		2167 (62.2%)	1317 (37.8%)	3484 (100.0%)
		15.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552 (94.9%)	83 (5.1%)	1635 (100.0%)
	사립중	901 (91.8%)	80 (8.2%)	981 (100.0%)
$x^2=9.95^*$				
Total		2453 (93.8%)	163 (6.2%)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835 (89.1%)	224 (10.9%)	2059 (100.0%)
	자율형고	591 (92.6%)	47 (7.4%)	638 (100.0%)
	특성화고	442 (90.2%)	48 (9.8%)	490 (100.0%)
	특목고	286 (96.3%)	11 (3.7%)	297 (100.0%)
$x^2=19.64^{***}$				
Total		3154 (90.5%)	330 (9.5%)	3484 (100.0%)
		22.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428 (26.2%)	1207 (73.8%)	1635 (100.0%)
	사립중	260 (26.5%)	721 (73.5%)	981 (100.0%)
$x^2=0.03$				
Total		688 (26.3%)	1928 (73.7%)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744 (36.1%)	1315 (63.9%)	2059 (100.0%)
	자율형고	189 (29.6%)	449 (70.4%)	638 (100.0%)
	특성화고	160 (32.7%)	330 (67.3%)	490 (100.0%)
	특목고	74 (24.9%)	223 (75.1%)	297 (100.0%)
$x^2=20.70^{***}$				
Total		1167 (33.5%)	2317 (66.5%)	3484 (100.0%)

〈표 2-3-3〉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11.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x^2=60.16^{***}$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153 (67.6%)	1033 (32.4%)	3186 (100.0%)
	조례지역	2229 (76.5%)	684 (23.5%)	2913 (100.0%)
Total		4382 (71.8%)	1717 (28.2%)	6099 (100.0%)
		12.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x^2=67.25^{***}$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1892 (59.4%)	1293 (40.6%)	3185 (100.0%)
	조례지역	2024 (69.5%)	889 (30.5%)	2913 (100.0%)
Total		3916 (64.2%)	2182 (35.8%)	6098 (100.0%)
		14.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x^2=0.91$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069 (64.9%)	1118 (35.1%)	3187 (100.0%)
	조례지역	1925 (66.1%)	988 (33.9%)	2913 (100.0%)
Total		3994 (65.5%)	2106 (34.5%)	6100 (100.0%)
		15.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x^2=0.02$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928 (91.9%)	259 (8.1%)	3187 (100.0%)
	조례지역	2679 (92.0%)	234 (8.0%)	2913 (100.0%)
Total		5607 (91.9%)	493 (8.1%)	6100 (100.0%)
		22.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x^2=3.84^*$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934 (29.3%)	2253 (70.7%)	3187 (100.0%)
	조례지역	921 (31.6%)	1992 (68.4%)	2913 (100.0%)
Total		1855 (30.4%)	4245 (69.6%)	6100 (100.0%)

## 2-4. 적법한 상·벌점제 운영 관련

학교에서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학생은 67.0%, 고등학생은 69.9%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중학생은 33.0%, 고등학생은 30.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69.2%, 사립중학교는 63.3%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공립중학교는 30.8%, 사립중학교는 36.7%로 나타났다.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84.7%, 조례지역은 51.1%가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에 있어 비조례지역과 조례지역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3.6%, 고등학생은 30.2%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5.1%, 사립중학교는 21.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74.4%, 조례지역은 69.6%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비조례지역이 조례지역 보다 조금 높게 상벌점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1〉 적법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응답자별)

단위: 명(%)

$\chi^2=6.03^*$	13-1.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No	Yes	Total	
응답자	중학생	864 (33.0%)	1752 (67.0%)	2616 (100.0%)
	고등학생	1048 (30.1%)	2436 (69.9%)	3484 (100.0%)
Total		1912 (31.3%)	4188 (68.7%)	6100 (100.0%)
$\chi^2=22.85^{***}$	13-2.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437 (23.6%)	1411 (76.4%)	1848 (100.0%)
	고등학생	770 (30.2%)	1783 (69.8%)	2553 (100.0%)
Total		1207 (27.4%)	3194 (72.6%)	4401 (100.0%)

〈표 2-4-2〉 적법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학교유형별)

단위: 명(%)

		13-1.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Total
		No	Yes	
학교유형	공립중	504 (30.8%)	1131 (69.2%)	1635 (100.0%)
	$x^2=9.56^*$ 사립중	360 (36.7%)	621 (63.3%)	981 (100.0%)
Total		864 (33.0%)	1752 (67.0%)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647 (31.4%)	1412 (68.6%)	2059 (100.0%)
	$x^2=7.89^*$ 자율형고	179 (28.1%)	459 (71.9%)	638 (100.0%)
	특성화고	150 (30.6%)	340 (69.4%)	490 (100.0%)
	특목고	72 (24.2%)	225 (75.8%)	297 (100.0%)
Total		1048 (30.1%)	2436 (69.9%)	3484 (100.0%)
		13-2.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297 (25.1%)	888 (74.9%)	1185 (100.0%)
	$x^2=3.67$ 사립중	140 (21.1%)	523 (78.9%)	663 (100.0%)
Total		437 (23.6%)	1411 (76.4%)	1848 (100.0%)
학교유형	일반고	486 (32.6%)	1003 (67.4%)	1489 (100.0%)
	$x^2=12.46^{**}$ 자율형고	118 (24.8%)	358 (75.2%)	476 (100.0%)
	특성화고	97 (27.1%)	261 (72.9%)	358 (100.0%)
	특목고	69 (30.0%)	161 (70.0%)	230 (100.0%)
Total		770 (30.2%)	1783 (69.8%)	2553 (100.0%)

〈표 2-4-3〉 적법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13-1.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Total
		No	Yes	
$x^2=800.23^{***}$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487 (15.3%)	2700 (84.7%)	3187 (100.0%)
	조례지역	1425 (48.9%)	1488 (51.1%)	2913 (100.0%)
Total		1912 (31.3%)	4188 (68.7%)	6100 (100.0%)
		13-2.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708 (25.6%)	2053 (74.4%)	2761 (100.0%)
	조례지역	499 (30.4%)	1141 (69.6%)	1640 (100.0%)
Total		1207 (27.4%)	3194 (72.6%)	4401 (100.0%)

## 2-5.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관련 (사생활의 자유 침해 관련)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9%, 고등학생은 21.2%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1.5%, 사립중학교는 15.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3.2%, 조례지역은 11.5%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보다 검사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시험 성적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7%, 고등학생은 18.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1.6%, 사립중학교는 14.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율형고가 1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17.8%, 조례지역은 13.6%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공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사실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0.7%, 고등학생은 47.7%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7%, 사립중학교는 37.3%로 나타나 사립중학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43.2%, 조례지역은 37.3%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공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신상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1.9%, 고등학생은 11.2%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2.7%, 사립중학교는 10.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12.7%, 조례지역은 10.2%가 그렇지 라고 답하여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5-1〉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단위: 명(%)

$x^2=71.35^{***}$	17.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2279 (87.1%)	2616 (100.0%)
	고등학생	2745 (78.8%)	3484 (100.0%)
Total	5024 (82.4%)	1076 (17.6%)	6100 (100.0%)
$x^2=32.52^{***}$	18.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2283(87.3%)	2616(100.0%)
	고등학생	2853(81.9%)	3484 (100.0%)
Total	5136(84.2%)	964(15.8%)	6100 (100.0%)
$x^2=179.44^{***}$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을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1813 (69.3%)	2615 (100.0%)
	고등학생	1823 (52.3%)	3484 (100.0%)
Total	3636 (59.6%)	2463 (40.4%)	6099 (100.0%)
$x^2=.63$	25.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징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2306 (88.1%)	2616 (100.0%)
	고등학생	3094 (88.8%)	3484 (100.0%)
Total	5400 (88.5%)	700 (11.5%)	6100 (100.0%)

〈표 2-5-2〉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관련 학생 응답 분석 (학교유형별)

단위: 명(%)

		17.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447 (88.5%)	188 (11.5%)	1635 (100.0%)
	사립중	832 (84.8%)	149 (15.2%)	981 (100.0%)
$x^2=7.44^*$				
Total		2279 (87.1%)	337 (12.9%)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601 (77.8%)	458 (22.2%)	2059 (100.0%)
	자율형고	551 (86.4%)	87 (13.6%)	638 (100.0%)
	특성화고	360 (73.5%)	130 (26.5%)	490 (100.0%)
	특목고	233 (78.5%)	64 (21.5%)	297 (100.0%)
$x^2=31.54^{***}$				
Total		2745 (78.8%)	739 (21.2%)	3484 (100.0%)
		18.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446 (88.4%)	189 (11.6%)	1635 (100.0%)
	사립중	837 (85.3%)	144 (14.7%)	981 (100.0%)
$x^2=5.37$				
Total		2283 (87.3%)	333 (12.7%)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648 (80.0%)	411 (20.0%)	2059 (100.0%)
	자율형고	543 (85.1%)	95 (14.9%)	638 (100.0%)
	특성화고	415 (84.7%)	75 (15.3%)	490 (100.0%)
	특목고	247 (83.2%)	50 (16.8%)	297 (100.0%)
$x^2=12.14^{**}$				
Total		2853 (81.9%)	631 (18.1%)	3484 (100.0%)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할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199 (73.3%)	436 (26.7%)	1635 (100.0%)
	사립중	614 (62.7%)	366 (37.3%)	980 (100.0%)
$x^2=32.87^{***}$				
Total		1813 (69.3%)	802 (30.7%)	2615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063 (51.6%)	996 (48.4%)	2059 (100.0%)
	자율형고	335 (52.5%)	303 (47.5%)	638 (100.0%)
	특성화고	225 (45.9%)	265 (54.1%)	490 (100.0%)
	특목고	200 (67.3%)	97 (32.7%)	297 (100.0%)
$x^2=35.32^{***}$				
Total		1823 (52.3%)	1661 (47.7%)	3484 (100.0%)

표 이어짐		25.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장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428 (87.3%)	207 (12.7%)	1635 (100.0%)
	사립중	878 (89.5%)	103 (10.5%)	981 (100.0%)
Total		2306 (88.1%)	310 (11.9%)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829 (88.8%)	230 (11.2%)	2059 (100.0%)
	자율형고	573 (89.8%)	65 (10.2%)	638 (100.0%)
	특성화고	421 (85.9%)	69 (14.1%)	490 (100.0%)
	특목고	271 (91.2%)	26 (8.8%)	297 (100.0%)
Total		3094 (88.8%)	390 (11.2%)	3484 (100.0%)

〈표 2-5-3〉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관련 학생 응답 분석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x^2=143.03^{***}$		17.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447 (76.8%)	740 (23.2%)	3187 (100.0%)
	조례지역	2577 (88.5%)	336 (11.5%)	2913 (100.0%)
Total		5024 (82.4%)	1076 (17.6%)	6100 (100.0%)
$x^2=20.45^{***}$		18.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619 (82.2%)	568 (17.8%)	3187 (100.0%)
	조례지역	2517 (86.4%)	396 (13.6%)	2913 (100.0%)
Total		5136 (84.2%)	964 (15.8%)	6100 (100.0%)
$x^2=21.32^{***}$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을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1811 (56.8%)	1375 (43.2%)	3186 (100.0%)
	조례지역	1825 (62.7%)	1088 (37.3%)	2913 (100.0%)
Total		3636 (59.6%)	2463 (40.4%)	6099 (100.0%)
$x^2=9.48^{**}$		25.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장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783 (87.3%)	404 (12.7%)	3187 (100.0%)
	조례지역	2617 (89.8%)	296 (10.2%)	2913 (100.0%)
Total		5400 (88.5%)	700 (11.5%)	6100 (100.0%)

## 2-6.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54.6%, 고등학생은 52.6%,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59.9%, 고등학생은 64.0%,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25.9%, 고등학생은 24.6%,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70.3%, 고등학생은 56.4%,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은 중학생은 70.3%, 61.0%,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시간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83.35, 고등학생은 76.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이 중에서 핸드폰 사용 제한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55.6%, 사립중학교는 52.9%,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59.8%, 사립중학교는 60.2%,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28.2%, 사립중학교는 22.1%,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72.5%, 사립중학교는 66.5%,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은 공립중학교는 80.5%, 사립중학교는 67.0%,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시간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87.7%, 사립중학교는 84.2%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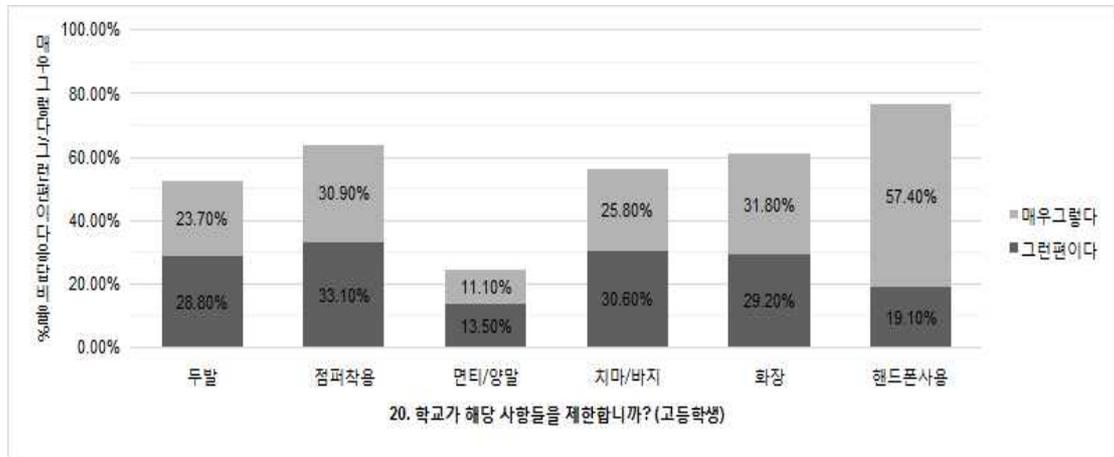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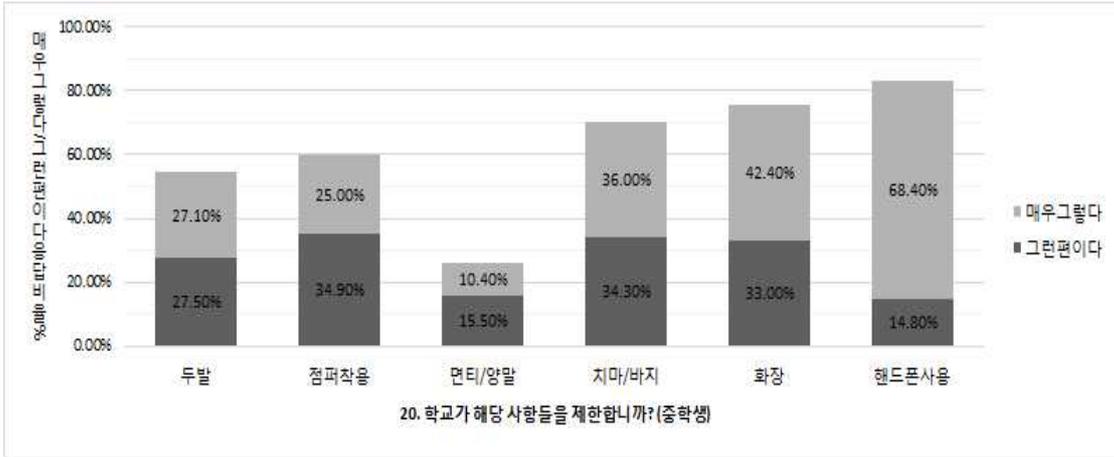
두발의 길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복 외 점퍼 착용을 제한하는 학교 중에는 자율형고가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면티/양말 색깔을 제한하는 학교 중에는 자율형고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마/바지 길이나 폭을 제한하는 학교 중에는 자율형고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5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을 제한하는 학교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5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시간 동안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자율형고가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조레지역이 비조레지역 보다 제한율이 낮게 나타났다. 두발길이나 모양을 제한에 대해 비조레지역은 66.1%, 조레지역은 39.6%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비조레지역은 65.7%, 조레지역은 58.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비조레지역은 32.2%, 조레지역은 17.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비조레지역은 68.7%, 조레지역은 55.4%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에 대해 비조레지역은 71.8%, 조레지역은 62.1%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비조레지역은 84.0%, 조레지역은 74.4%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이 중에서 지역 간 제한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이다.

〈표 2-6-1〉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단위: 명(%)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x^2=2.49$	중학생	1187 (45.4%)	1427 (54.6%)	2614 (100.0%)
	고등학생	1653 (47.4%)	1831 (52.6%)	3484 (100.0%)
	Total	2840 (46.6%)	3258 (53.4%)	6098 (100.0%)
②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x^2=10.52^{**}$	중학생	1048 (40.1%)	1568 (59.9%)	2616 (100.0%)
	고등학생	1254 (36.0%)	2230 (64.0%)	3484 (100.0%)
	Total	2302 (37.7%)	3798 (62.3%)	6100 (100.0%)
③면티/양말 색깔 제한 $x^2=1.38$	중학생	1938 (74.1%)	678 (25.9%)	2616 (100.0%)
	고등학생	2627 (75.4%)	857 (24.6%)	3484 (100.0%)
	Total	4565 (74.8%)	1535 (25.2%)	6100 (100.0%)
④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x^2=122.25^{***}$	중학생	778 (29.7)	1838 (70.3)	2616 (100.0%)
	고등학생	1519 (43.6%)	1965 (56.4%)	3484 (100.0%)
	Total	2297 (37.7%)	3803 (62.3%)	6100 (100.0%)
⑤화장/미용제품/ 미용기기반입 제한 $x^2=141.58^{***}$	중학생	643 (24.6%)	1973 (75.4%)	2616 (100.0%)
	고등학생	1360 (39.0%)	2124 (61.0%)	3484 (100.0%)
	Total	2003 (32.8%)	4097 (67.2%)	6100 (100.0%)
⑥수업외 시간/ 기숙사생활 동안 핸드폰사용제한 $x^2=42.12^{***}$	중학생	438 (16.7%)	2178 (83.3%)	2616 (100.0%)
	고등학생	820 (23.5%)	2664 (76.5%)	3484 (100.0%)
	Total	1258 (20.6%)	4842 (79.4%)	6100 (100.0%)



〈그림 2-6-1〉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경험 (학생유형별)

〈표 2-6-2〉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중학교 유형별)

단위: 명(%)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x^2=1.78$	공립중	726 (44.4%)	909 (55.6%)	1635 (100.0%)
	사립중	461 (47.1%)	518 (52.9%)	979 (100.0%)
	Total	1187 (45.4%)	1427 (54.6%)	2614 (100.0%)
②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x^2=0.06$	공립중	658 (40.2%)	977 (59.8%)	1635 (100.0%)
	사립중	390 (39.8%)	591 (60.2%)	981 (100.0%)
	Total	1048 (40.1%)	1568 (59.9%)	2616 (100.0%)
③면티/양말 색깔 제한 $x^2=11.79^*$	공립중	1174 (71.8%)	461 (28.2%)	1635 (100.0%)
	사립중	764 (77.9%)	217 (22.1%)	981 (100.0%)
	Total	1938 (74.1%)	678 (25.9%)	2616 (100.0%)
④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x^2=10.83^*$	공립중	449 (27.5%)	1186 (72.5%)	1635 (100.0%)
	사립중	329 (33.5%)	652 (66.5%)	981 (100.0%)
	Total	778 (29.7%)	1838 (70.3%)	2616 (100.0%)
⑤화장/미제품/ 미용기기반입 제한 $x^2=60.43^{***}$	공립중	319 (19.5%)	1316 (80.5%)	1635 (100.0%)
	사립중	324 (33.0%)	657 (67.0%)	981 (100.0%)
	Total	643 (24.6%)	1973 (75.4%)	2616 (100.0%)
⑥수업외시간/ 기숙사생활 동안 핸드폰사용제한 $x^2=1.00$	공립중	283 (17.3%)	1352 (82.7%)	1635 (100.0%)
	사립중	155 (15.8%)	826 (84.2%)	981 (100.0%)
	Total	438 (16.7%)	2178 (83.3%)	2616 (100.0%)

〈표 2-6-3〉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고등학교 유형별)

단위: 명(%)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x^2=55.53^{***}$	일반고	955 (46.4%)	1104 (53.6%)	2059 (100.0%)
	자율형고	255 (40.0%)	383 (60.0%)	638 (100.0%)
	특성화고	249 (50.8%)	241 (49.2%)	490 (100.0%)
	특목고	194 (65.3%)	103 (34.7%)	297 (100.0%)
	Total	1653 (47.4%)	1831 (52.6%)	3484 (100.0%)
②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x^2=58.30^{***}$	일반고	753 (36.6%)	1306 (63.4%)	2059 (100.0%)
	자율형고	161 (25.2%)	477 (74.8%)	638 (100.0%)
	특성화고	193 (39.4%)	297 (60.6%)	490 (100.0%)
	특목고	147 (49.5%)	150 (50.5%)	297 (100.0%)
	Total	1254 (36.0%)	2230 (64.0%)	3484 (100.0%)
③면티/양말 색깔 제한 $x^2=20.10^{***}$	일반고	1550 (75.3%)	509 (24.7%)	2059 (100.0%)
	자율형고	448 (70.2%)	190 (29.8%)	638 (100.0%)
	특성화고	383 (78.2%)	107 (21.8%)	490 (100.0%)
	특목고	246 (82.8%)	51 (17.2%)	297 (100.0%)
	Total	2627 (75.4%)	857 (24.6%)	3484 (100.0%)
④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x^2=.000$	일반고	941 (45.7%)	1118 (54.3%)	2059 (100.0%)
	자율형고	218 (34.2%)	420 (65.8%)	638 (100.0%)
	특성화고	214 (43.7%)	276 (56.3%)	490 (100.0%)
	특목고	146 (49.2%)	151 (50.8%)	297 (100.0%)
	Total	1519 (43.6%)	1965 (56.4%)	3484 (100.0%)
⑤화장/미용제품/ 미용기기반입 제한 $x^2=30.51^{***}$	일반고	852 (41.4%)	1207 (58.6%)	2059 (100.0%)
	자율형고	234 (36.7%)	404 (63.3%)	638 (100.0%)
	특성화고	154 (31.4%)	336 (68.6%)	490 (100.0%)
	특목고	120 (40.4%)	177 (59.6%)	297 (100.0%)
	Total	1360 (39.0%)	2124 (61.0%)	3484 (100.0%)
⑥수업외 시간/ 기숙사생활 동안 핸드폰사용제한 $x^2=18.40^{***}$	일반고	514 (25.0%)	1545 (75.0%)	2059 (100.0%)
	자율형고	86 (13.5%)	552 (86.5%)	638 (100.0%)
	특성화고	151 (30.8%)	339 (69.2%)	490 (100.0%)
	특목고	69 (23.5%)	228 (76.8%)	297 (100.0%)
	Total	820 (23.2%)	2664 (76.5%)	3484 (100.0%)

〈표 2-6-4〉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①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x^2=429.72^{***}$	비조례지역	1080 (33.9%)	2105 (66.1%)	3185 (100.0%)
	조례지역	1760 (60.4%)	1153 (39.6%)	2913 (100.0%)
	Total	2840 (46.6%)	3258 (53.4%)	6098 (100.0%)
②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x^2=33.65^{***}$	비조례지역	1093 (34.3%)	2094 (65.7%)	3187 (100.0%)
	조례지역	1209 (41.5%)	1704 (58.5%)	2913 (100.0%)
	Total	2302 (37.7%)	3798 (62.3%)	6100 (100.0%)
③면티/양말 색깔 제한 $x^2=173.55^{***}$	비조례지역	2162 (67.8%)	1025 (32.2%)	3187 (100.0%)
	조례지역	2403 (82.5%)	510 (17.5%)	2913 (100.0%)
	Total	4565 (74.8%)	1535 (25.2%)	6100 (100.0%)
④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x^2=115.44^{***}$	비조례지역	997 (31.3%)	2190 (68.7%)	3187 (100.0%)
	조례지역	1300 (44.6%)	1613 (55.4%)	2913 (100.0%)
	Total	2297 (37.7%)	3803 (62.3%)	6100 (100.0%)
⑤화장/미용제품/ 미용기기반입제한 $x^2=65.69^{***}$	비조례지역	898 (28.2%)	2289 (71.8%)	3187 (100.0%)
	조례지역	1105 (37.9%)	1808 (62.1%)	2913 (100.0%)
	Total	2003 (32.8%)	4097 (67.2%)	6100 (100.0%)
⑥수업외 시간/ 기숙사생활 동안 핸드폰사용제한 $x^2=85.86^{***}$	비조례지역	511 (16.0%)	2676 (84.0%)	3187 (100.0%)
	조례지역	747 (25.6%)	2166 (74.4%)	2913 (100.0%)
	Total	1258 (20.6%)	4842 (79.4%)	6100 (100.0%)

## 2-7. 서약서/동의서 강제 (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관련

서약서, 동의서를 강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4.4%, 고등학생은 23.8%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5.4%, 사립중학교는 12.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타 학교유형에 비해 특목고의 학생생활 통제나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4.4%, 조례지역은 14.7%로 나타나 조례지역보다 비조례지역의 강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7-1〉 서약서/동의서 강제(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응답자별)

단위: 명(%)

$x^2=83.39^{***}$		21.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응답자	중학생	2239 (85.6%)	377 (14.4%)	2616 (100.0%)
	고등학생	2654 (76.2%)	830 (23.8%)	3484 (100.0%)
Total		4893 (80.2%)	1207 (19.8%)	6100 (100.0%)

〈표 2-7-2〉 서약서/동의서 강제(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학교유형별)

단위: 명(%)

		21.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x^2=3.55$	학교유형	1383 (84.6%)	252 (15.4%)	1635 (100.0%)			
	공립중						
	사립중	856 (87.3%)	125 (12.7%)	981 (100.0%)			
	Total	2239 (85.6%)	377 (14.4%)	2616 (100.0%)			
$x^2=15.95^{**}$	학교유형	1548 (75.2%)	511 (24.8%)	2059 (100.0%)			
	일반고						
	자율형고				486 (76.2%)	152 (23.8%)	638 (100.0%)
	특성화고				406 (82.9%)	84 (17.1%)	490 (100.0%)
	특목고	214 (72.1%)	83 (27.9%)	297 (100.0%)			
Total		2654 (76.2%)	830 (23.8%)	3484 (100.0%)			

〈표 2-7-3〉 서약서/동의서 강제(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조례시행여부)

단위: 명(%)

$x^2=89.94^{***}$		21.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409 (75.6%)	778 (24.4%)	3187 (100.0%)
	조례지역	2484 (85.3%)	429 (14.7%)	2913 (100.0%)
Total		4893 (80.2%)	1207 (19.8%)	6100 (100.0%)

## 2-8. 학생의 학습권, 교육에 대한 선택권, 휴식권 침해 (교육에 관한 권리 침해) 관련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9%, 고등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7.3%, 사립중학교는 26.2%로 나타났다. 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2.8%, 조례지역은 31.4%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탈의실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49.1%, 고등학생은 27.0%로 나타났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27.7%, 고등학생은 47.6%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하였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46.4%, 사립중학교는 58.3%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27.3%, 사립중학교는 28.7%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에 탈의실이 있다고 답한 학교유형 중 특목고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2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된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2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탈의실 설치율이 가장 낮으면서, 자유로운 이용률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61.6%, 조례지역은 65.6%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38.6%, 조례지역은 34.9%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고민이 있을 때 자유롭게 학교상담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8%, 고등학생은 22.3%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3.3%, 사립중학교는 11.9%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15.3%, 조례지역은 21.4%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사용 제한으로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2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0.7%, 사립중학교는 22.8%로 나타났다.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3.1%, 조례지역은 19.1%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침해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8-1〉 학생의 학습권, 교육에 대한 선택권, 휴식권 침해 관련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단위: 명(%)

$x^2=57.08^{***}$	16.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1911 (73.1%)	704 (26.9%)	2615 (100.0%)
	고등학생	2228 (63.9%)	1256 (36.1%)	3484 (100.0%)
Total		4139 (67.9%)	1960 (32.1%)	6099 (100.0%)
$x^2=317.94^{***}$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No	Yes	Total	
응답자	중학생	1331 (50.9%)	1285 (49.1%)	2616 (100.0%)
	고등학생	2543 (73.0%)	939 (27.0%)	3482 (100.0%)
Total		3874 (63.5%)	2224 (36.5%)	6098 (100.0%)
$x^2=108.32^{***}$	23-2.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383 (27.7%)	998 (72.3%)	1381 (100.0%)
	고등학생	569 (47.6%)	627 (52.4%)	1196 (100.0%)
Total		952 (36.9%)	1625 (63.1%)	2577 (100.0%)
$x^2=91.18^{***}$	24.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334 (12.8%)	2282 (87.2%)	2616 (100.0%)
	고등학생	777 (22.3%)	2707 (77.7%)	3484 (100.0%)
Total		1111 (18.2%)	4989 (81.8%)	6100 (100.0%)
$x^2=.20$	26.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Total	
응답자	중학생	2054 (78.5%)	561 (21.5%)	2615 (100.0%)
	고등학생	2753 (79.0%)	731 (21.0%)	3484 (100.0%)
Total		4807 (78.8%)	1292 (21.2%)	6099 (100.0%)

〈표 2-8-2〉 학생의 학습권, 교육에 대한 선택권, 휴식권 침해 관련 학생 응답 분석 (학교유형별)  
단위: 명(%)

		16.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188 (72.7%)	447 (27.3%)	1635 (100.0%)
	사립중	723 (73.8%)	257 (26.2%)	980 (100.0%)
Total		1911 (73.1%)	704 (26.9%)	2615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222 (59.3%)	837 (40.7%)	2059 (100.0%)
	자율형고	463 (72.6%)	175 (27.4%)	638 (100.0%)
	특성화고	331 (67.6%)	159 (32.4%)	490 (100.0%)
	특목고	212 (71.4%)	85 (28.6%)	297 (100.0%)
Total		2228 (63.9%)	1256 (36.1%)	3484 (100.0%)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Total
		No	Yes	
학교유형	공립중	759 (46.4%)	876 (53.6%)	1635 (100.0%)
	사립중	572 (58.3%)	409 (41.7%)	981 (100.0%)
Total		1331 (50.9%)	1285 (49.1%)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583 (76.9%)	476 (23.1%)	2059 (100.0%)
	자율형고	395 (61.9%)	243 (38.1%)	638 (100.0%)
	특성화고	387 (79.0%)	103 (21.0%)	490 (100.0%)
	특목고	179 (60.3%)	118 (39.7%)	297 (100.0%)
Total		2544 (73.0%)	940 (27.0%)	3484 (100.0%)
		23-2.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255 (27.3%)	680 (72.7%)	935 (100.0%)
	사립중	128 (28.7%)	318 (71.3%)	446 (100.0%)
Total		383 (27.7%)	998 (72.3%)	1381 (100.0%)
학교유형	일반고	382 (58.8%)	268 (41.2%)	650 (100.0%)
	자율형고	78 (28.2%)	199 (71.8%)	277 (100.0%)
	특성화고	82 (58.2%)	59 (41.8%)	141 (100.0%)
	특목고	27 (21.1%)	101 (78.9%)	128 (100.0%)
Total		569 (47.6%)	627 (52.4%)	1196 (100.0%)

		24.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217 (13.3%)	1418 (86.7%)	1635 (100.0%)
	사립중	117 (11.9%)	864 (88.1%)	981 (100.0%)
Total		334 (12.8%)	2282 (87.2%)	2616 (100.0%)
학교유형	일반고	492 (23.9%)	1567 (76.1%)	2059 (100.0%)
	자율형고	100 (15.7%)	538 (84.3%)	638 (100.0%)
	특성화고	118 (24.1%)	372 (75.9%)	490 (100.0%)
	특목고	67 (22.6%)	230 (77.4%)	297 (100.0%)
Total		777 (22.3%)	2707 (77.7%)	3484 (100.0%)
		26.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유형	공립중	1297 (79.3%)	338 (20.7%)	1635 (100.0%)
	사립중	757 (77.2%)	223 (22.8%)	980 (100.0%)
Total		2054 (78.5%)	561 (21.5%)	2615 (100.0%)
학교유형	일반고	1614 (78.4%)	445 (21.6%)	2059 (100.0%)
	자율형고	474 (74.3%)	164 (25.7%)	638 (100.0%)
	특성화고	423 (86.3%)	67 (13.7%)	490 (100.0%)
	특목고	242 (81.5%)	55 (18.5%)	297 (100.0%)
Total		2753 (79.0%)	731 (21.0%)	3484 (100.0%)

〈표 2-8-3〉 학생의 학습권, 교육에 대한 선택권, 휴식권 침해 관련 학생 응답 분석(조례시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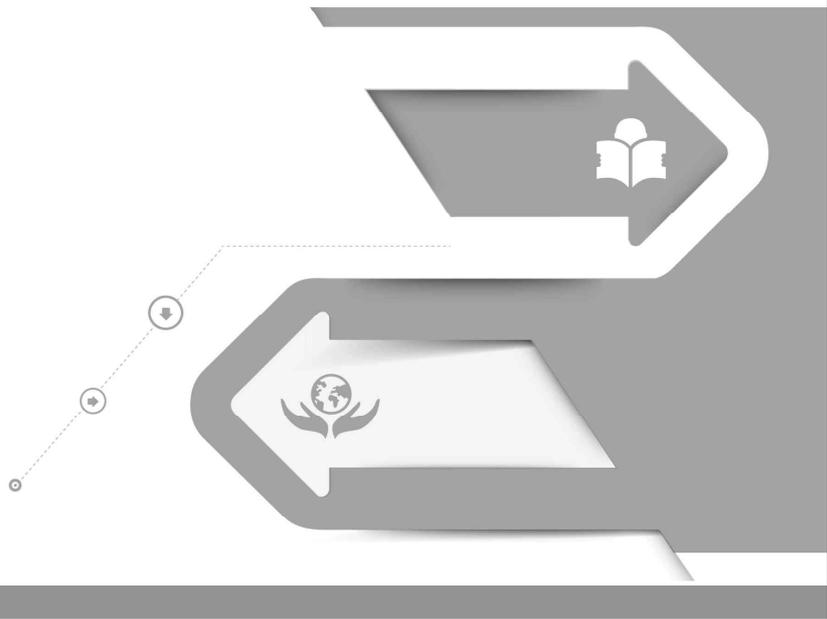
단위: 명(%)

$x^2=1.22$	16.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142 (67.2%)	1044 (32.8%)	3186 (100.0%)
	조례지역	1997 (68.6%)	916 (31.4%)	2913 (100.0%)
Total		4139 (67.9%)	1960 (32.1%)	6099 (100.0%)
$x^2=12.58^{**}$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Total	
	No	Yes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1963 (61.6%)	1223 (38.4%)	3186 (100.0%)
	조례지역	1911 (65.6%)	1001 (34.4%)	2912 (100.0%)
Total		3874 (63.5%)	2224 (36.5%)	6098 (100.0%)
$x^2=3.80$	23-2.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552 (38.6%)	878 (61.4%)	1430 (100.0%)
	조례지역	400 (34.9%)	747 (65.1%)	1147 (100.0%)
Total		952 (36.9%)	1625 (63.1%)	2577 (100.0%)
$x^2=36.89^{***}$	24.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489 (15.3%)	2698 (84.7%)	3187 (100.0%)
	조례지역	622 (21.4%)	2291 (78.6%)	2913 (100.0%)
Total		1111 (18.2%)	4989 (81.1%)	6100 (100.0%)
$x^2=14.89^{***}$	26.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2450 (76.9%)	736 (23.1%)	3186 (100.0%)
	조례지역	2357 (80.9%)	556 (19.1%)	2913 (100.0%)
Total		4807 (78.8%)	1292 (21.2%)	6099 (100.0%)



# 학생인권 인식조사 분석결과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생인권 인식조사 분석결과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인권 인식 조사 14개 문항 각각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응답을 빈도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 3-1. 학생인권 인식 수준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는 ‘알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39.5%, 41.0%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교사는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사 집단은 ‘잘 알고 있다’와 ‘알고 있는 편이다’를 합한 응답이 87.3%로 거의 90%에 달한 반면에 ‘잘 모른다’는 2.4%에 불과했다.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고등학생은 18.8%, 중학생은 27.6%보다 10% 가까이 낮았다.

〈표 3-1〉 학생인권 인식 수준(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chi^2=330.85^{***}$	1.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에 대해 나는				Total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편이다	약간 안다	잘 모른다		
응답자	학생	1376 (22.6%)	2408 (39.5%)	1519 (24.9%)	797 (13.1%)	6100 (100.0%)
	학부모	436 (23.7%)	754 (41.0%)	403 (21.9%)	246 (13.4%)	1839 (100.0%)
	교사	381 (45.2%)	377 (44.8%)	64 (7.6%)	20 (2.4%)	842 (100.0%)
Total		2193 (25.0%)	3539 (40.3%)	1986 (22.6%)	1063 (12.1%)	8781 (100.0%)

### 3-2.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집단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57.6% ~ 77.2%). 그런데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서, 학생과 교사 집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4%와 57.6% 수준으로 유사했으나, 학부모는 20% 가까이 더 높은 비율(77.2%)로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55.8%로, 중학생 61.9%보다 낮았다.

〈표 3-2〉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chi^2=317.51^{***}$	2.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은 내게				Total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른 것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응답자	학생	3563 (58.4%)	2016 (33.0%)	191 (3.1%)	330 (5.4%)	6100 (100.0%)
	학부모	1419 (77.2%)	391 (21.3%)	9 (0.5%)	20 (1.1%)	1839 (100.0%)
	교사	485 (57.6%)	345 (41.0%)	8 (1.0%)	4 (0.5%)	842 (100.0%)
Total		5467 (62.3%)	2752 (31.3%)	208 (2.4%)	354 (4.0%)	8781 (100.0%)

### 3-3. 인권 침해 시 반응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의 대응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학생(64.3%), 교사(65.9%)에 비해 학부모가 85.9%로 약 20% 이상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와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의 합도 학생(27.4%)이나 교사(29.4%)에 비해 학부모 집단은 그 절반 이하(11.7%)로 낮았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답변한 고등학생은 61.0%로, 중학생 68.8%보다 낮았다.

〈표 3-3〉 인권 침해 시 반응(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x^2=336.82^{***}$	3.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나는				Total	
	내 권리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응답자	학생	3925 (64.3%)	1410 (23.1%)	261 (4.3%)	504 (8.3%)	6100 (100.0%)
	학부모	1579 (85.9%)	188 (10.2%)	27 (1.5%)	45 (2.4%)	1839 (100.0%)
	교사	554 (65.9%)	226 (26.9%)	21 (2.5%)	40 (4.8%)	841 (100.0%)
	Total	6058 (69.0%)	1824 (20.8%)	309 (3.5%)	589 (6.7%)	8780 (100.0%)

### 3-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63.5%)이 높았던 데에 비해 학부모, 교사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학부모 35.7%, 교사 45.0%). ‘학교 규제 반대’ 입장이 중학생(62.1%)보다 고등학생의 경우(64.5%)에 약간 더 높았다.

〈표 3-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x^2=1248.26^{***}$	4.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				Total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응답자	학생	3871 (63.5%)	1409 (23.1%)	572 (9.4%)	248 (4.1%)	6100 (100.0%)
	학부모	622 (33.8%)	417 (22.7%)	656 (35.7%)	144 (7.8%)	1839 (100.0%)
	교사	325 (38.6%)	114 (13.5%)	379 (45.0%)	24 (2.9%)	842 (100.0%)
	Total	4818 (54.9%)	1940 (22.1%)	1607 (18.3%)	416 (4.7%)	8781 (100.0%)

### 3-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46.5%) 교사(56.2%)와 학부모(33.0%)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은 세 집단 모두 낮았지만, 학부모 집단이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지(10.1%)를 보였다. 두발을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중학생(44.3%)보다 고등학생의 경우(48.1%)에 약간 더 높았다.

〈표 3-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응답자	학교의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해	5. 학교의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해				Total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학생	2834 (46.5%)	2294 (37.6%)	732 (12.0%)	240 (3.9%)	6100 (100.0%)	
학부모	450 (24.5%)	597 (32.5%)	606 (33.0%)	186 (10.1%)	1839 (100.0%)	
교사	127 (15.1%)	198 (23.5%)	473 (56.2%)	44 (5.2%)	842 (100.0%)	
Total	3411 (38.8%)	3089 (35.2%)	1811 (20.6%)	470 (5.4%)	8781 (100.0%)	

### 3-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하여 학생은 ‘전교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45.6%), 학부모(39.2%)와 교사(61.0%)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은 세 집단 모두 낮았지만,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지(12.8%)를 보였다. 복장을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중학생(30.6%)보다 고등학생(34.3%)이 약간 더 높았다.

〈표 3-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x^2=1280.56^{***}$	6.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해				Total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응답자	학생	1996 (32.7%)	2783 (45.6%)	991 (16.2%)	330 (5.4%)	6100 (100.0%)
	학부모	304 (16.5%)	579 (31.5%)	720 (39.2%)	235 (12.8%)	1838 (100.0%)
	교사	61 (7.2%)	194 (23.0%)	514 (61.0%)	73 (8.7%)	842 (100.0%)
Total		2361 (26.9%)	3556 (40.5%)	2225 (25.3%)	638 (7.3%)	8780 (100.0%)

### 3-7.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교내 CCTV 설치에 대하여 학생은 ‘전교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48.9%)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학부모(50.0%)와 교사(62.5%)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

〈표 3-7〉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x^2=765.30^{***}$	7.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Total	
	설치해서는 안된다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응답자	학생	757 (12.4%)	2980 (48.9%)	1592 (26.1%)	771 (12.6%)	6100 (100.0%)
	학부모	122 (6.6%)	549 (29.9%)	919 (50.0%)	247 (13.4%)	1837 (100.0%)
	교사	32 (3.8%)	162 (19.2%)	526 (62.5%)	122 (14.5%)	842 (100.0%)
Total		911 (10.4%)	3691 (42.0%)	3037 (34.6%)	1140 (13.0%)	8779 (100.0%)

### 3-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46.4% ~ 65.0%),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소지품 검사를 학교가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세 집단 모두 가장 낮았지만, 학부모(9.7%)가 학생(3.8%)이나 교사(4.0%)에 비해 두 배나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표 3-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chi^2=393.07^{***}$	8. 학교의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해				Total	
	해선 안된다	학생/학교 안전과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수시로 할 수 있다		
응답자	학생	1805 (29.6%)	2832 (46.4%)	1234 (20.2%)	229 (3.8%)	6100 (100.0%)
	학부모	255 (13.9%)	1048 (57.0%)	357 (19.4%)	178 (9.7%)	1838 (100.0%)
	교사	85 (10.1%)	547 (62.0%)	176 (20.9%)	34 (4.0%)	842 (100.0%)
	Total	2145 (24.4%)	4427 (50.4%)	1767 (20.1%)	441 (5.0%)	8780 (100.0%)

### 3-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학생 56.1%, 학부모 53.6%), 반면에 교사는 ‘동의를 받으면’가능하다는 입장이 50% 이상이었다(55.1%).

〈표 3-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x^2=106.05$ ***	9.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해				Total	
	학생정보를 외부에 공개/제공해선안된다	동의를 받으면 공개/제공할 수 있다	기본정보이면 동의 없이 공개/제공할 수 있다	학교가 판단하여 공개/제공할 수 있다		
응답자	학생	3420 (56.1%)	2283 (37.4%)	241 (4.0%)	156 (2.6%)	6100 (100.0%)
	학부모	986 (53.6%)	765 (41.6%)	45 (2.4%)	42 (2.3%)	1838 (100.0%)
	교사	343 (40.7%)	464 (55.1%)	20 (2.4%)	15 (1.8%)	842 (100.0%)
Total		4749 (54.1%)	3512 (40.0%)	306 (3.5%)	213 (2.4%)	8780 (100.0%)

### 3-10.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 등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하여 학생은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입장(52.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에 학부모(51.2%)나 교사(65.3%)는 ‘수업권 침해나 학생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를 지지한 입장이 가장 우세했다.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은 고등학생(55.2%)이 중학생(48.7%)보다 높았다.

〈표 3-10〉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x^2=636.79$ ***	10. 교내 학생 집회(예,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에 대해				Total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수업권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교내에서는 집회를 해선 안된다		
응답자	학생	3197 (52.4%)	1911 (31.3%)	751 (12.3%)	241 (4.0%)	6100 (100.0%)
	학부모	575 (31.3%)	941 (51.2%)	263 (14.3%)	59 (3.2%)	1838 (100.0%)
	교사	135 (16.0%)	550 (65.3%)	131 (15.6%)	26 (3.1%)	842 (100.0%)
Total		3907 (44.5%)	3402 (38.7%)	1145 (13.0%)	326 (3.7%)	8780 (100.0%)

### 3-11.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인식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76.1% ~ 86.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교사가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지지했다.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 고등학생(82.4%)이 중학생(74.7%)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11〉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chi^2=189.93^{***}$	11. 학생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				Total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	참여는 의무다	잘 모르겠다		
응답자	학생	4825 (79.1%)	650 (10.7%)	200 (3.3%)	425 (7.0%)	6100 (100.0%)
	학부모	1398 (76.1%)	344 (18.7%)	64 (3.5%)	32 (1.7%)	1838 (100.0%)
	교사	728 (86.5%)	89 (10.6%)	9 (1.1%)	16 (1.9%)	842 (100.0%)
	Total	6951 (79.2%)	1083 (12.3%)	273 (3.1%)	473 (5.4%)	8780 (100.0%)

### 3-12.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한 인식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 높은 비율로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74.0% ~ 88.8%)을 보였다. 학생(74.0%)보다 학부모(88.8%)나 교사(86.1%) 집단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이 더 높았다. 고등학생은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75.9%)이 중학생(71.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2〉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x^2=245.03^{***}$	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해				Total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	참여는 의무다	잘 모르겠다		
응답자	학생	4517 (74.0%)	413 (6.8%)	196 (3.2%)	974 (16.0%)	6100 (100.0%)
	학부모	1632 (88.8%)	90 (4.9%)	30 (1.6%)	86 (4.7%)	1838 (100.0%)
	교사	725 (86.1%)	52 (6.2%)	9 (1.1%)	56 (6.7%)	842 (100.0%)
Total		6874 (78.3%)	555 (6.3%)	235 (2.7%)	1116 (12.7%)	8780 (100.0%)

### 3-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하여 학생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는 입장(44.9%)이 가장 높았고,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입장(41.9%)이 가장 높았으며, 학부모는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입장(38.7%)과 ‘잘못을 했을 때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는 입장(38.4%)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x^2=608.97^{***}$	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Total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응답자	학생	2128 (34.9%)	2737 (44.9%)	623 (10.2%)	612 (10.0%)	6100 (100.0%)
	학부모	710 (38.7%)	704 (38.4%)	372 (20.3%)	49 (2.7%)	1835 (100.0%)
	교사	353 (41.9%)	153 (18.2%)	294 (34.9%)	42 (5.0%)	842 (100.0%)
Total		3191 (36.4%)	3594 (40.9%)	1289 (14.7%)	703 (8.0%)	8777 (100.0%)

### 3-14. 성적에 따른 제한에 대한 인식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65.8% ~ 72.4%), 특히 교사 집단은 성적에 따른 그러한 제한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72.4%)이 가장 높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고등학생(67.9%)이 중학생(63.0%)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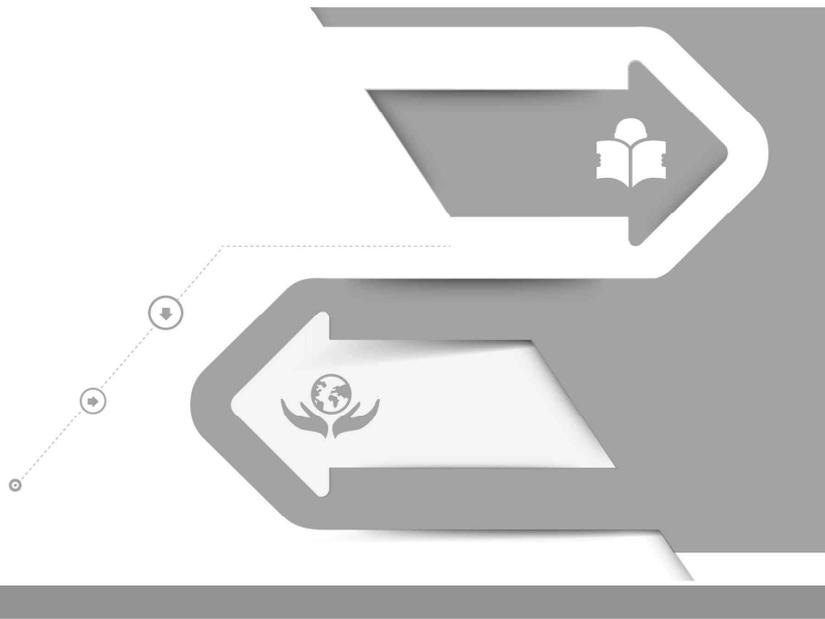
〈표 3-14〉 성적에 따른 제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chi^2=189.48^{***}$	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생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				Total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이해한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응답자	학생	4013 (65.8%)	1116 (18.3%)	314 (5.1%)	657 (10.8%)	6100 (100.0%)
	학부모	1280 (69.8%)	419 (22.8%)	75 (4.1%)	61 (3.3%)	1835 (100.0%)
	교사	610 (72.4%)	200 (23.8%)	19 (2.3%)	13 (1.5%)	842 (100.0%)
Total		5903 (67.3%)	1735 (19.8%)	408 (4.6%)	731 (8.3%)	8777 (100.0%)

# 학교규칙의 기본권 침해실태

박선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교규칙의 기본권 침해실태

박선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 학교규칙과 학생의 법적 지위

#### 1) 학교규칙의 의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학교규칙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 중에서 7항, 8항 및 9항이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 2) 학교규칙의 규범력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학교의 주체들 사이의 합의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학교는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자치 활동과 학생 지도 방법 등을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자율성의 상징이 된다.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의 각 주체들이 학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 학교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안내, 홍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예외 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학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성격을 갖는다. 교원에게 있어서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상벌 등 학생지도의 기준이 되며, 학칙 제개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참여를 통해서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게 된다. 학칙은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한다. 학칙은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될 때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 3) 학생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의 보장의 원칙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은 광범위한 학생지도권의 객체에 불과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특별권력관계이론’으로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개별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교육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더 이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에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은 교사와 부모 사이에 놓여 있는 미성년의 존재로서 그의 기본권의 실현은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육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학생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충돌의 상황의 모순을 명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규칙이다. 따라서 학교규칙이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의 법리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아울러 학교규칙에서 기본권 보장의 독소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제거한다면 학교규칙이 학생들에게 규범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학교규칙 분석 항목의 설정

### 1) 학생의 기본권의 주요 영역과 내용

지방교육자치단체 중심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관련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조례 분석을 통해 학생인권의 영역과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조례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 영역 및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피해 학생보호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아간지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등
사생활의 자유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강요 금지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 CCTV 설치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 수렴 - 개인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표현 제한 금지 - 서명이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참여 등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자치 및 참여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존중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적법한 징계절차	-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진술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 등. - 징계내용 공고 금지 -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개선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상담·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 2) 학교규칙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의 필수적 요소

(1) 기본권 보장의 원칙이 선언되고 주요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

학교규칙을 헌법과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의 기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공동체의 규범으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학교규칙에서도 뚜렷하게 선언될 필요성이 있다. 기본권 보장의 원칙의 선언은 학교규칙이 학생에게 기본권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동시에 학교라는 폐쇄적일수도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의 유혹을 일찌감치 뿌리치게 하는 빛장의 역할을 한다.

학교규칙은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가장 먼저 단호하게 선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서 주로 침해되기 쉽고 침해의 사례가 많은 기본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 보장원칙의 선언과 학생의 기본권의 구체적 열거를 통하여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개별 기본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학교규칙은 학생기본권의 구체적인 실천규범으로서 개별 권리들의 올바른 행사와 제한에 어떠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학생에게도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교규칙에서 모든 기본권의 내용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권으로 주로 문제되었던 기본권 혹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로는 차별금지위반, 사생활 침해,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 (3) 학칙위반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되는 인적 요소와 교육시설이라는 물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공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학교의

중심적 존재 의의는 교과교육과 같은 교육활동이지만 공동체 규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강제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생활지도도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교규칙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징계절차 또는 선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종래 협의의 학교규칙은 학칙 위반에 대한 징계절차와 같은 의미로 쓰일 정도로 학칙 위반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교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징계 또는 선도절차는 사법(司法)<sup>사법</sup>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공무원 징계절차에 관한 행정절차 또는 형사절차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행정 절차 중에서 가장 명확해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 (4)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원칙 4가지 중의 하나로 의견표명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을 선언하고 있다.<sup>1)</sup>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가진다는 자주성과 독립성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절차에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장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의견권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은 자주적, 민주적 시민 양성의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학교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현장의 현실에서 학생의 의견표명권의 구체적 실천의 어려움은 의견표명권을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권리에만 머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의견표명권과 참여권의 보장은 그 절차적 권리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비단 집행주체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규칙의 제정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 (5) 규범으로서 적절한 내용과 형식,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

학교규칙에 대한 인지도는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85.8%로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규칙에 대해서 본 적이 있으며 학교생활규범으로서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이는 2006년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sup>2)</sup>의 48.5%보다 상당히 진전된 조사결과로서 지난 10년 동안 학교현장, 교사, 학부모 단체 및 국가기관 등이 학교규칙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왔던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학교규칙은 규범의 수범자이자 징계절차 등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규범으로서의 제 위치를 찾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우선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규칙, 개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이 규범으로서 위엄을 가지기에 너무나 조잡한 학교규칙, 금지와 처벌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오히려 실제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학교규칙 등이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규칙은 위와 같은 규범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규칙의 준수를 강제하고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공동체인 학교의 규칙이 국가나 사회의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단지 강제적인 규범력(power of the rules)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진정한 위엄 (dignity of the rules)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3) 분석항목 설정

위에서 실시한 학교규칙의 필수적 요소를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규칙 분석을 위한 항목을 기본권 보장 영역, 개별 기본권의 침해여부 판단 영역,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 의견권 및 참여권 존중 영역, 마지막으로 규범의 형식과 용어의 영역 등 크게 5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전체 10개의 항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표 4-2〉 참조).

2) 중고등학생 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표 4-2〉 학칙 분석 영역 및 항목

영역	번호	항목	Yes	No
1. 기본권 보장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2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2.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3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4	사생활 침해 금지에 위반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5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3. 절차적 권리의 보장	7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선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4.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8	학생 선도(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9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5. 규범의 형식 (용어와 개념)	10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본권 보장 영역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원칙의 선언과 중요한 학생의 기본권의 열거 여부를, 개별 기본권의 침해 여부 영역에서는 차별금지·사생활침해금지·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학생의 중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서는 징계 또는 선도절차에서의 구체성 여부를, 의견권 존중과 참여권 보장 영역에서는 징계(선도)절차와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서의 의견권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 여부를, 마지막으로 규범의 형식과 용어의 영역에서는 규범의 명확성과 용어와 개념의 사용의 적절성 등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 3. 학교규칙 실태 조사

#### 1) 조사 대상 학교규칙의 선정

중학교는 17개 광역단위에서 공립과 사립으로 각 1개의 학교를 추첨하여 34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고등학교는 17개 지역에서 각 6개의 학교유형별로 각 1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102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로써 종합 136개 학교의 교칙을 조사·분석하였다.<sup>3)</sup>

3) 학칙 분석에 포함된 학교 수:

## 2) 항목별 조사 결과 (10개 항목)

### (1) 기본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3〉 기본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문항	전체 (N=136)		중학교 (N=34)		고등학교 (N=102)	
	Yes	No	Yes	No	Yes	No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30 (22.1)	106 (77.9)	11 (32.4)	23 (67.6)	19 (18.6)	83 (81.4)
2.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27 (19.9)	109 (80.1)	8 (23.5)	26 (76.5)	19 (18.6)	83 (81.4)

### (2)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4〉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문항	전체(N=136)		중학교(N=34)		고등학교(N=102)	
	Yes	No	Yes	No	Yes	No
3.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27 (19.9)	109 (80.1)	8 (23.5)	26 (76.5)	19 (18.6)	83 (81.4)
4. 부당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126 (92.6)	10 (7.4)	31 (91.2)	3 (8.8)	95 (93.1)	7 (6.9)
5.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113 (83.1)	23 (16.9)	32 (94.1)	2 (5.9)	81 (79.4)	21 (20.6)
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14 (10.3)	122 (89.7)	5 (14.7)	29 (85.3)	9 (8.8)	93 (91.2)

### (3)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5〉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문항	전체(N=136)		중학교(N=34)		고등학교(N=102)	
	Yes	No	Yes	No	Yes	No
7.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선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129 (94.9)	7 (5.1)	31 (91.2)	3 (8.8)	98 (96.1)	4 (3.9)

- 중학교: 17개 지역 x 2개 학교유형(공립, 사립) = 34
- 고등학교: 17개 지역 x 6개 학교유형 = 102
- 총 34+102=136개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분석함.

(4)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6〉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문항	전체 (N=136)		중학교 (N=34)		고등학교(N=102)	
	Yes	No	Yes	No	Yes	No
8. 학생 선도(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127 (93.4)	9 (6.6)	30 (88.2)	4 (11.8)	97 (95.1)	5 (4.9)
9.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130 (95.6)	6 (4.4)	33 (97.1)	1 (2.9)	97 (95.1)	5 (4.9)

(5) 규범의 형식(용어와 개념)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7〉 규범의 형식(용어와 개념)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문항	전체 (N=136)		중학교 (N=34)		고등학교(N=102)	
	Yes	No	Yes	No	Yes	No
10.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114 (83.8)	22 (16.2)	31 (91.2)	3 (8.8)	83 (81.4)	19 (18.6)

### 3) 침해 학칙 조항의 분석 기준 및 예시

〈표 4-8〉 침해 학칙 조항의 분석기준 및 예시

1. 기본권 보장 영역		
항목	분석기준	예시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 학교규칙의 목적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측면에 대한 기술여부	* 학교규칙의 목적 조항이 없거나 학교규칙을 금지와 처벌 규정에 중점을 둔 경우가 전체 77.9%로 조사됨
2.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 학생의 주요한 기본권이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기본권의 열거없이 학생의 의무와 금지, 상벌 위주로 되어 있는 학교규칙이 전체 80.1%로 조사됨
2.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항목	분석기준	예시
3.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규칙의 비율이 아직까지도 20%로 조사됨  <b>예시 1)</b> 성별에 따른 차별조항 ④ 여학생으로서의 단정한 몸가짐과 태도를 익히자 <b>예시 2)</b> 성적·징계 등을 이유로 한 임원자격 차별조항 (임원선발기준): ① 신입생 배치고사 결과 석차 백분율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시를 불허한다. ② 결원 보충은 최근시험성적순(모의고사 포함)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계열석차 백분율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 불허),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성적은 전(前)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 중 전체 4개 이상이 4 등급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④ 교과 성적이 해당학년의 1학기에 성취도 “E”가 1/3을 넘지 않는 학생(총명한 학생), 해당 학년의 출석률이 98% 이상이며 무단결석이 없는 학생(건강한 학생), 간부수련회 활동에 참석한 학생(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학생)인 자로 한다. ⑤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b>예시 3)</b> 임원과 일반학생과의 차별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반장·부반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 간 봉사한다. <b>예시 4)</b> 성적과 징계등을 이유로 한 포상제한 차별 및 이중차별 (포상제한제54조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포상할 수 없다.(단, 교과우수상 등 성적과 관련이 있는 상은 예외) (이중차별) 학교선도위원회에서 내려진 모든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징계 시점 이후 장학금제외(당 학기 수령 시 반납),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경시대회에 참석 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회 임원,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이 될 수 없고, 학교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모든 직책은 징계시점 이후부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며, 그 직은 재선출 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생활 침해 금지에 위반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강요 금지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 CCTV 설치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 수렴 * 개인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착용 강제 금지 등의 사생활 침해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 사생활 침해 조항이 92.6%로 조사됨  <b>예시 5)</b> 두발관련 제한 ① 염색은 검정색만 허용한다. 파마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염색과 파마머리, 붙임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③ 염색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고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남학생 - 앞머리를 당겼을 때 눈에 닿지 않아야 하며 구레나룻을 길러서는 안 된다. -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목을 덮지 않아야 한다. - 가르마와 식발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 2) 여학생 - 여학생 두발은 옆머리가 귀밑 10CM를 벗어나지 않는 단정한 단발머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보다 긴 머리(어깨선 기준 10cm 밑)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히 묶어야 한다.(머리띠는 화려하지 않는 학생다운 것으로 해야 한다.

	<p>- 머리를 묶을 때에는 장식이 없는 고무줄로 느슨하게 묶지 않으며, 장식이 있거나 천으로 싸여진 고무줄, 머리띠 금지 앞머리를 고무줄로 묶는 사과머리 금지. 머리를 말아 올리거나 땀겨나 자갈치머리, 갈래머리 등 금지.</p> <p><b>예시 6) 화장 제한</b></p> <p>①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색조 화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1) 물티슈 또는 클렌징티슈 등으로 닦아서 색깔이 묻어나오는 모든 색조 화장          2) 립밤, 립글로스 등을 막론하고 모든 색조 관련 미용품</p> <p><b>예시 7) 화장 외 미용관련 제한 (렌즈, 문신, 헤어, 매니큐어 등)</b></p> <p>① 문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을 진행하고 벌점 5점을 부과한다.          ② 교내에서 귀걸이, 피어싱은 금지된다.          ③ 목걸이, 반지, 귀고리, 팔찌, 눈에 띄는 머리 핀 등은 착용을 금지한다.          ④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 등을 하지 않는다.          ⑤ 써클렌즈는 허용하지 않는다.          ⑥ 시력 보정의 목적이 아닌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컬러렌즈, 써클렌즈 착용을 금한다.          ⑦ 반지(목주반지 포함)·팔찌(염주팔찌 포함)등의 착용을 금지한다</p> <p><b>예시 8) 신발, 가방, 양말, 면티, 외투, 교복 등의 모양 및 색깔 제한 (선도기준규정)</b></p> <p>① 신발:          1) 원색(빨강, 주황, 노랑, 주황, 형광색 등)의 운동화는 착용 금지          2)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이나 통굽인 경우          3) 발목위로 높이 올라오는 등산화 또는 군화형의 신발을 착용하는 행위          4) 유행에 민감한 형태나 색깔의 신발을 신는 경우 (마귀신발 대발이신발등)</p> <p>② 가방          1) 등에 매는 가방 이외의 것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          2) 강렬한 원색의 가방이나 쇼핑 백을 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색(빨강, 노랑 등)적이고 선정적인 문구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p> <p>③ 양말          1) 빨강, 노랑 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색을 제외한 흰색, 회색, 검은색 계통의 것          2)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렬한 원색 요란한 무늬의 양말을 착용하는 경우          3) 규정된 양말 이외의 것을 신고 다니는 경우 (숙녀용 스타킹 토시 등)          4) 남학생 양말은 단색 계통의 검정색, 짙은 남색, 흰색, 회색 등만 허용한다.</p> <p>④ 교복          1) 치마(여): 치마의 길이가 무릎을 완전히 덮지 못하거나 폭을 지나치게 줄인 것          2) 바지(남,여): 바지의 기장이나 폭을 줄여 지나치게 몸에 붙는 것          ⑤ 그 외 기타          1) 겨울철 덧옷(코트, 점퍼류), 셔츠류, 양말은 원색이거나 색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피하고, 외래어나 눈에 거슬리는 무늬가 있는 것은 금한다.          2) 가디건, 조끼 허용 : 남색, 검은색, 보라색/ 셔츠 안 반팔티, 폴라티 허용 : 흰색, 어두운 색          3) 하절기에도 흰색 또는 옅은 회색의 내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여학생은 검정색 허용)          4)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경우</p> <p><b>예시 9) 아간지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제하는 규정</b></p> <p>① 자율학습 참여는 의무이며, 부득이 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에는 사감선생님의 허락을 얻는다.</p> <p><b>예시 10) 학생의 소유의 물건 관련된 침해</b></p> <p>① 화장품 소지는 일절 금하며 적발 시 압수하여 폐기처분된다.          ②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단속에 걸리면 압수한다.</p> <p><b>예시 11) 소지품 검사에 관한 침해</b></p> <p>*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상황 또는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동의하에",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등 소지품 검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p> <p>①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할 때 실시한다.          ②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품 및 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b>예시 12) 기숙사 생활 침해</b></p> <p>① 기숙사 불시점검 (반입금지물품 사용상태 또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공지 및 동의 없이 호실을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p> <p><b>예시 13) 흡연, 오토바이 적발 학생에 대한 침해</b></p> <p>②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규정 주기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교 내·외 흡연</p>
--	---

		<p>학생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이동 제한) 하계, 동계 휴가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처벌: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④ 흡연, 담배, 라이터 소지로 적발될 경우 스포츠 형으로 정리</p> <p><b>예시 14) 고정형 명찰 패용 의무의 부과로 인한 침해</b> ① 교복 상의(자켓, 블라우스, 셔츠, 조끼, 가디건 모두 포함)는 왼쪽 가슴 주머니에 녹색의 학교마크와 이름(동복, 화색, 하복, 남색)을 모두 박아서 새긴다. ② 교복은 반드시 상하의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새겨 넣고 조끼 및 교복상의에는 지정된 곳에 본인의 이름을 해당학년에 맞는 색상으로 새긴다. ③ 직사각형꼴의 형태로 학년별로(2013년도 기준) 자주색(빨강)색, 녹색, 노랑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명찰은 전체 부착 방식으로 한다.</p>
<p>5.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p>	<p>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 표현 제한 금지, 서명이나 설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 참여금지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p>	<p>*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83.1%</p> <p><b>예시 15) 교외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 규정</b> ①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② 정치 관련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③ 학생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p> <p><b>예시 16) 동아리 활동 등 13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b> ①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가입한 자 ②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③ 학교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④ 집단행동 모임을 주동한 자 ⑤ 특별 활동 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임, 교우들 간의 사적 모임을 동아리로 지칭하거나 후배를 모집하는 경우 해체를 지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학칙에 의거 처벌한다.</p> <p><b>예시 17) 교내·외 집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는 규정</b> ①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②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외 집회 동아리 모임 참가 ③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 담임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p>
<p>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p>	<p>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p>	<p>*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가 10.3%의 비율</p> <p><b>예시 18) 특정종교과목 수강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b> ① 본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각종 종교행사를 통하여 인성지도를 실시한다. 1) 아침예배시간에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경을 준비하고 조용히 방송에 귀 기울인다. 2) 정오의 기도시간에는 타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들지 않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3) 체플시간에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경을 준비한다. ② 예배 시간에는 솔선해서 참여하며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한다.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킨다. 단, 종교가 다를 시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키도록 한다.</p> <p><b>예시 19) 부정행위 방관/방조/은닉에 대한 징계사유 규정</b> ① 고사 중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 친구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 또는 묵인하거나 동조한 학생 ② 가출한 학생의 소재를 고의로 숨기고 은닉시켜 준 학생 ③ 밤 12시 이후 자신의 홈/룸메이트가 방을 이탈하는 것을 알면서 방관하거나, 자신의 방으로 다른 방의 구성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방관하는 경우 통급위반에 준한 벌을 받는다. ④ 불량 서클 가입 금지 및 서클가입 요구서(목격자 포함) 즉시 신고</p> <p><b>예시 20) 반성문 또는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b> &lt;서식 2&gt; 서약서 (상벌점제) 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지킴은 물론, 학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이후 학생 신분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보호자의 확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p> <p><b>예시 21) 기타 (사대에 맞지 않은 규정)</b> ① 국가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 ② (불은사상)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p>

### 3. 절차적 권리의 보장

항목	분석기준	예시
7.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선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징계(선도)위원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규정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절차 안내, 대리인 선임권, 징계내용 공고 금지 상·벌점제 등에 관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여부	* 징계(선도)절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5.1%의 비율로 조사됨

### 4.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항목	분석기준	예시
8. 학생 선도(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선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의견존중,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징계(선도)절차에서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진술기회의 보장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규칙의 비율이 6.6%
9.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규칙의 비율이 4.4%

### 5. 규범의 형식(용어와 개념)

항목	분석기준	예시
10. 개별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본권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규범으로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조잡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	* 개별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83.8%  예시 22)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등의 용어의 사용 (징계사유) ①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②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③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착용한 경우 ④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머리를 한 경우 ⑤ 학생으로서 단정하지 못한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경우 ⑥ 휴대하지 말아야 할 용품 : 장신구와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용품 ⑦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⑧ 연행이 불손하거나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행위  예시 23) '불건전한', '풍기', '문란' 등의 용어의 사용 (징계사유) ① 남녀 간에 풍기문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남녀 간의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자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학생 ③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④ 교내에서 이성교 손을 잡고 다니며 풍기를 문란시키는 학생 ⑤ 불순한 이성교제 및 퇴폐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행위 ⑥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3. 기타 추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의 사용으로 징계사유를 규정 ① 징계기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기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②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③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④ 불법 과외수업 금지 조치에 위반된 행위를 한 학생 ⑤ 각종 촬영기기(카메라 폰 등)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타인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물론 타인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입힌 학생 ⑥ 기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⑦ 인사를 하지 않거나 불손하게 하는 경우. ⑧ (시대와 맞지 않은 조항)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체에 진정이 있는 학생

## 4. 학교규칙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 1) 기본권 보장의 원칙 영역

항목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2.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항목 1은 학교가 학교규칙의 제정취지 또는 목적 조항을 통하여 학생의 기본권 주체성과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의지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조사 결과 학교규칙의 제정 취지 또는 목적 조항이 없거나 목적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원칙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전체 약 77.9%의 비율을 보였다. 항목 2는 마찬가지로 학교규칙이 학생의 주요한 기본권을 열거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항목이다. 이 항목2에 대해서도 항목 1과 비슷하게 학생의 권리에 대한 열거적 조항이 없는 학교규칙이 약 80.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상당수의 학교들이 학교규칙을 제정하면서 학생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관한 조항이나 학생의 권리의 열거조항 없이 과거 학교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바로 학생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학교규칙이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칙을 제정하는 이유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통제·관리하고 엄격한 학생지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호와 민주시민 양성에 더욱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 학교는 목적 조항을 통하여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2) 개별 기본권의 침해여부 분석

#### (1) 차별금지의 원칙 위반

항목 3.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3. 차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서는 학교규칙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의 학칙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차별적 요소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보인다(80.1%). 그러나 조사대상 학교규칙 중에서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규칙의 비율이 아직까지도 19.9%로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별조항이 흔히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단정함을 요구하고 있는 학칙도 있었다(예시 1).

예시 1) 여학생으로서의 단정한 몸가짐과 태도를 익히자.

차별금지위반 학교규칙으로 조사된 대부분의 예는 성적, 징계를 이유로 한 임원자격, 포상제한 및 이층처벌의 경우였다. 임원선발의 기준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거나 결석 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되도록 한 학교규칙의 예는 다음과 같다(예시3).

예시 2)

〈임원선발기준〉

- ① 신입생 배치고사 결과 석차 백분율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를 불허한다.
- ② 결원 보충은 최근시험성적순(모의고사 포함)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계열석차 백분율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 불허),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성적은 전(前)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 중 전체 4개 이상이 4 등급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 ④ 교과 성적이 해당학년의 1학기에 성취도“E”가 1/3을 넘지 않는 학생(충명한 학생), 해당 학년의 출석률이 98%이상이며 무단결석이 없는 학생(건강한 학생), 간부수련회 활동에 참석한 학생(공동체의식을 가지는 학생)인 자로 한다.
- ⑤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차별금지위반 학칙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는 학급 내 봉사활동에 임원과 일반학생을 차별한 조항도 있었다(예시3).

예시 3) 임원과 일반학생과의 차별규정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반장(부반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 간 봉사한다.

포상을 제한하는 사유에 성적과 징계를 명확한 한계없이 규정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모든 경시대회 참여, 임원 자격 등을 일체 박탈한 경우가 있었다(예시 4).

예시 4) 성적과 징계들을 이유로 한 포상제한 차별 및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규정 제54조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포상할 수 없다.(단, 교과우수상 등 성적과 관련이 있는 상은 예외)

학교선도위원회에서 내려진 모든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징계 시점 이후 장학금제외(당 학기 수령 시 반납),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경시대회에 참석 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회 임원,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이 될 수 없고, 학교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모든 직책은 징계시점 이후부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며, 그 직은 재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 (2) 사생활 침해의 금지 원칙 위반

항목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 부분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고정형 명찰 부착강요 금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CCTV 설치, 소지품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착용 강제 금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07. 43쪽). 조사결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92.6%로서 대부분의 학교규칙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와 같은 사생활 침해조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이 학생의 주요 기본권 중의 하나라는 인식과 실천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에도 학생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가 교육적 효과의 달성이라는 목적 아래에 광범위하고도 확고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5) 두발관련 제한

- ① 염색은 검정색만 허용한다. 파마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② 염색과 파마머리, 붙임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 ③ 염색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고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남학생

- 앞머리를 당졌을 때 눈에 닿지 않아야 하며 구레나룻을 길러서는 안 된다.
-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목을 덮지 않아야 한다.
- 가르마와 삭발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

2) 여학생

- 여학생 두발은 옆머리가 귀밑 10CM를 벗어나지 않는 단정한 단발머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보다 긴 머리(어깨선 기준 10cm 밑)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히 묶어야 한다.(머리띠는 화려하지 않는 학생다운 것으로 해야 한다.
- 머리를 묶을 때에는 장식이 없는 고무줄로 느슨하게 묶지 않으며, 장식이 있거나 천으로 싸여진 고무줄, 머리띠 금지. 앞머리를 고무줄로 묶는 사과머리 금지. 머리를 말아 올리거나 땡거나 자갈치머리, 갈래머리 등 금지.

예시 6) 화장 제한

- ①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색조 화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1) 물티슈 또는 클렌징티슈 등으로 닦아서 색깔이 묻어나오는 모든 색조 화장
  - 2) 립밤, 립클로스 등을 막론하고 모든 색조 관련 미용품

예시 7) 화장 외 미용관련 제한 (렌즈, 문신, 해나, 매니큐어 등)

- ① 문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을 진행하고 벌점 5 점을 부과한다.
- ② 교내에서 귀걸이, 피어싱은 금지된다.
- ③ 목걸이, 반지, 귀고리, 팔찌, 눈에 띄는 머리 핀 등은 착용을 금지한다.
- ④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 등을 하지 않는다.
- ⑤ 써클렌즈는 허용하지 않는다.
- ⑥ 시력 보정의 목적이 아닌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컬러렌즈, 써클렌즈 착용을 금한다.
- ⑦ 반지(목주반지 포함)·팔찌(염주팔찌 포함)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예시 8) 신발, 가방, 양말, 면티, 외투, 교복 등의 모양 및 색깔 제한 (선도기준규정)

- ① 신발:
  - 1) 원색(빨강, 주황, 노랑, 주황, 형광색 등)의 운동화는 착용 금지
  - 2)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이나 통굽인 경우
  - 3) 발목위로 높이 올라오는 등산화 또는 군화형의 신발을 착용하는 행위
  - 4) 유행에 민감한 형태나 색깔의 신발을 신는 경우  
(마귀신발 대발이신발등)
- ② 가방
  - 1) 등에 매는 가방 이외의 것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
  - 2) 강렬한 원색의 가방이나 쇼핑 팩을 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색(빨강, 노랑 등)적이고 선정적인 문구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양말
  - 1) 빨강, 노랑 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색을 제외한 흰색, 회색, 검은색 계통의 것
  - 2)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렬한 원색 요란한 무늬의 양말을 착용하는 경우
  - 3) 규정된 양말 이외의 것을 신고 다니는 경우 (숙녀용 스타킹, 토시 등)
  - 4) 남학생 양말은 단색 계통의 검정색, 짙은 남색, 흰색, 회색 등만 허용한다.
- ④ 교복
  - 1) 치마(여): 치마의 길이가 무릎을 완전히 덮지 못하거나 폭을 지나치게 줄인 것.

2) 바지(남,여): 바지의 기장이나 폭을 줄여 지나치게 몸에 붙는 것.

⑤ 그 외 기타

- 1) 겨울철 덧옷(코트, 점퍼류), 셔츠류, 양말은 흰색이거나 색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피하고, 외래어나 눈에 거슬리는 무늬가 있는 것은 금한다.
- 2) 가디건, 조끼 허용 : 남색, 검은색, 보라색/ 셔츠 안 반팔 티셔츠, 폴라티 허용 : 흰색, 어두운 색
- 3) 하절기에도 흰색 또는 옅은 회색의 내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여학생은 검정색 허용)
- 4)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경우

예시 9)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제하는 규정

- ① 자율학습 참여는 의무이며, 부득이 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에는 사감선생님의 허락을 얻는다.

예시 10) 학생의 소유의 물건 관련한 침해

- ① 화장품 소지는 일절 금하며 적발 시 압수하여 폐기처분된다.
- ②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단속에 걸리면 압수한다.

예시 11) 소지품 검사에 관한 침해

\*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상황 또는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동의하에”,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등 소지품 검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①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할 때 실시한다.
- ②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품 및 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12) 기숙사 생활 침해

- ① 기숙사 불시점검: (반입금지물품 사용상태 또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

한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공지 및 동의 없이 호실을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13) 흡연, 오토바이 적발 학생에 대한 침해

- ②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규정: 주기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교 내·외 흡연 학생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이동 제한) 하계, 동계 휴가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처벌: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④ 흡연, 담배, 라이터 소지로 적발될 경우 스포츠 형으로 정리

예시 14) 고정형 명찰 패용 의무의 부과로 인한 침해

- ① 교복 상의(자켓, 블라우스, 셔츠, 조끼, 가디건 모두 포함)는 왼쪽 가슴 주머니에 녹색의 학교마크와 이름(동복 회색, 하복 남색)을 모두 박아서 새긴다.
- ② 교복은 반드시 상하의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새겨 넣고 조끼 및 교복상의에는 지정된 곳에 본인의 이름을 해당학년에 맞는 색상으로 새긴다.
- ③ 직사각형꼴의 형태로 학년별로(2013년도 기준) 자주색(빨강)색, 녹색, 노랑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명찰은 전체 부착 방식으로 한다.

### (3)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항목 5.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학교 안이나 밖에서의 연설, 토론 및 저작 등의 개인적 표현이나 집회나 결사 활동을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3.1%에 해당하는 학칙이 뚜렷한 근거와 이유를 설시없이 의사 표현을 근본적으로 막거나 학교와 다른 학생에게 중대한 피해가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는 교내집회 선동 학생 징계 교외 정치적 활동 시 사전 교사나 관리자의 허가, 사회단체나 정치관여 금지 등 집단 행동에 대한 징계의 형태로 침해유형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단체행동이나 정치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

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장 허락없이 외부 행사 출품, 출연 또는 참가 금지함으로써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많았다. 또한 모든 게시물의 사전허가,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표현 제한 금지, 서명이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 교내에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향후 단체행동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활동에 대하여는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예시 15) 교외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 규정

- ①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② 정치 관련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③ 학생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예시 16)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 ①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가입한 자
- ② 허가 없이 씨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③ 학교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 ④ 집단행동 모의를 주동한 자
- ⑤ 특별 활동 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임, 교우들 간의 사적 모임을 동아리로 지칭하거나 후배를 모집하는 경우 해체를 지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학칙에 의거 처벌한다.

예시 17) 교내·외 집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는 규정

- ①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 ②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외 집회 동아리 모임 참가
- ③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 담임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항목 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침해 여부 항목에서는 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현의 자유와는 달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규칙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10.3%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앞서 실시한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 결과 자체로 학교규칙이 양심의 자유를 대체적으로 충분히 보장한다고 평가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 기본권으로서 학교교육 과정 중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침해가 쉽게 예정되어 있거나 흔하게 발생하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침해가 이루어지는 기본권 본연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규칙에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았지만 침해의 유형 측면에서 아래의 예시들을 살펴보면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비교하였을 때 그 위반의 심각성은 현저히 크다고 생각된다.

예시 18) 특정종교과목 수강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

- ① 본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각종 종교행사를 통하여 인성지도를 실시한다.
  - 1) 아침예배시간에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경을 준비하고 조용히 방송에 귀 기울인다.
  - 2) 정오의 기도시간에는 타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들지 않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 3) 채플시간에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경을 준비한다.
- ② 예배 시간에는 솔선해서 참여하며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한다.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킨다. 단, 종교가 다를 시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키도록 한다.

예시 19) 부정행위 방관/방조/은닉에 대한 징계사유 규정

- ① 고사 중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 친구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 또는 묵인하거나 동조한 학생
- ② 가출한 학생의 소재를 고의로 숨기고 은닉시켜 준 학생
- ③ 밤 12시 이후 자신의 흡/룸메이트가 방을 이탈하는 것을 알면서 방관하거나, 자신

의 방으로 다른 방의 구성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방관하는 경우 통금위반에 준한 벌을 받는다.

④ 불량 서클 가입 금지 및 서클가입 요구시(목격자 포함) 즉시 신고

예시 20) 반성문 또는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

〈서식 2〉 서약서 (상벌점제)

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지킴은 물론, 학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이후 학생 신분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보호자의 확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예시 21) 기타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정)

- ① 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
- ② (불온사상)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 3) 절차의 명확성과 절차적 권리 보장 부분

항목 7.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선도(징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학칙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선도(징계)절차는 학생들에게 징벌적 성격에 맞게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학칙에는 부당한 징계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표현하고 징계절차는 명확해야 하며 각 절차의 단계마다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항목 7.에서는 징계(선도)위원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규정,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절차 안내, 대리인 선임권, 징계내용 공고 금지, 상·벌점제 등에 관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분석대상 학칙의 94.9%의 학칙이 절차의 명확성과 절차적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학교규칙의 규정에 비하여는 준비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징계(선도)절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5.1%의 비율로 조사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4) 의견권의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

항목 8. 학생 선도(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9.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권리 중의 핵심은 당사자인 학생이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도 학칙의 수범자로서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거친 학칙만이 공동체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항목 8.9에서는 징계(선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존중,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규칙은 징계절차에서의 의견표명기회의 보장부분에서는 약93.4%,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의 학생 의견 수렴 부분에서는 약 95.6%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명문으로 의견권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을 학교규칙의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하고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의견 존중 및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다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앞서 기술된 인권침해 실태조사 항목 6번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에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할 학생이 전체의 63.4%(그런 편이다 49.4%, 매우 그렇다 17%)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차이를 통해서 의견 표명권과 참여권이 학교 현장에서 인식의 부족과 현실적 한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인다.

#### 5) 규범의 형식 및 용어와 개념

항목 10.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학교규칙이 자치규범으로서의 위엄과 엄격성을 갖추고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언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벌점제나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타당한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이 더욱 요구된다.

항목 10에서는 학교규칙이 기본권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규범으로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조잡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개별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8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학교규칙은 아래 예시와 같이 권위적이고 그 자체로 차별과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자의에 흐를 소지가 충분히 엿보이는 규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예시 22)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등의 용어의 사용 (징계사유)

- ①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②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③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착용한 경우
- ④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머리를 한 경우
- ⑤ 학생으로서 단정하지 못한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경우
- ⑥ 휴대하지 말아야 할 용품 : 장신구와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용품
- ⑦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 ⑧ 언행이 불손하거나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행위

예시 23) ‘불건전한’, ‘풍기’, ‘문란’ 등의 용어의 사용 (징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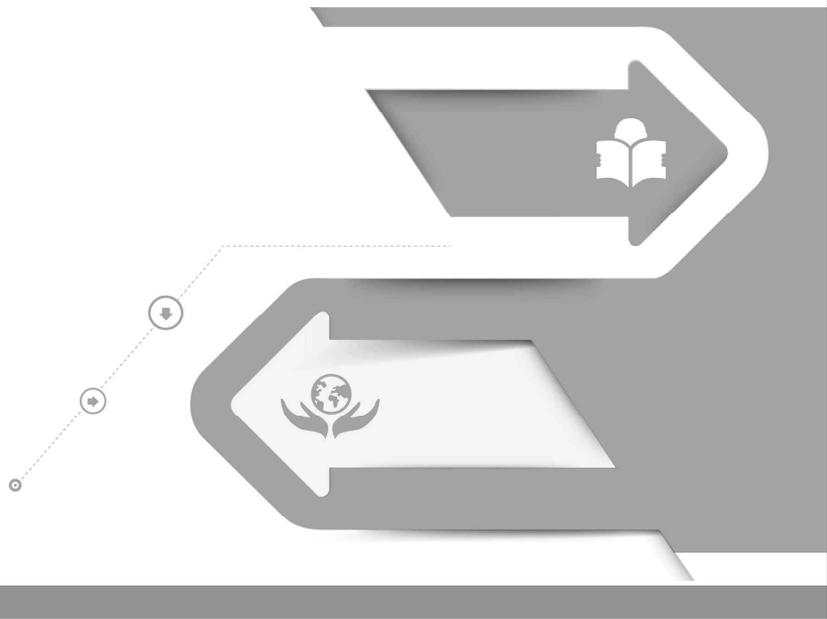
- ① 남녀 간에 풍기문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남녀 간의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학생
- ③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④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고 다니며 풍기를 문란시키는 학생
- ⑤ 불순한 이성교제 및 퇴폐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행위
- ⑥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3. 기타 추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의 사용으로 징계사유를 규정
- ① 징계기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②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③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 ④ 불법 과외수업 금지 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 ⑤ 각종 촬영기기(카메라 폰 등)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타인의 인격을 손상시킴은 물론 타인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입힌 학생
  - ⑥ 기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⑦ 인사를 하지 않거나 불손하게 하는 경우.
  - ⑧ (시대와 맞지 않은 조항) 물품을 의상으로 구입하여 사체에 진정이 있는 학생



# 결론 및 제언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결론 및 제언

김현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제언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생 권리 교육의 제공,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허용, 정기적 대의원 회의의 개최, 학생 생활 규칙이나 규정의 제·개정 시 혹은 학생관련 안건의 결정 시 전체 학생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의 허용 등의 문항들에서 예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성적 등의 이유로 학급/학생회 활동을 제한받은 경험을 보고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보다 더 적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의 출마나 활동의 제한을 경험 혹은 목격한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 중에서도 특히 일반고 학생이 30.0%로 가장 높았고 특목고 학생은 14.5%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이 26.4%, 조례지역이 20.7%로 비조례지역에서 조례지역에서보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의 출마나 활동의 제한을 경험 혹은 목격한 학생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고등학생 응답 간 특히 큰 차이를 보인 학생 인권 보장 관련 항목은 ‘학생 권리 교육’으로, 중학생은 71.3%가 학생 권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고등학

생은 54.4%만이 학생 권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 권리 관련 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비해 상당히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외에도 조사는 중학생들의 78.5%가 학생관련 안전 결정 시, 그리고 70.6%가 학칙 제·개정 시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물었다에 그렇다 라고 응답함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각각 69.1%, 60.9%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 라고 응답한 고등학생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유사하게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라는 채널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앞서의 주장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학교 운영이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학교규칙의 열람이나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의 구비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다르지 않았다. 전체 학생 응답자들 중 85% 정도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5% 정도가 교내에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는 또한 중·고등학생 100명 중 15명 정도가 자신의 생활을 규정짓는 학칙을 본 경험이 없다는 점과 국내 상당수의 중·고등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여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칙의 홍보와 교육 및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회 주관 대의원회의의 정기적 개최 여부에 대해 중학생은 84.9%, 고등학생은 80.7%가 학교에서 대의원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포함 전체 학생 응답자들 중 17.5%는 학교에서 대의원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의원 회의는 학생들이 학생 대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채널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민주 시민으로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학교는 따라서 이러한 학생회 주관의 대의원회의의 활동과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이에 정기적인 대의원회의 개최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과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 인권 보장과 관련한 항목들 중 조례시행 지역 대 조례비시행 지역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학칙 열람 경험의 유무와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의 구비, 성적 등의 이유로 인한 학급/학생회 활동의 제한에서였다. 조사를 통해 이들 항목들에서 학생 인권 친화적 경험을 보고한 학생들의 비율이 조례지역에서 비조례지역에서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항목들은 조례 시행 교육청들이 인권 침해 사례 분석이나 홍보, 지침,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려 노력하던 영역들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조례 시행 교육청 중 하나인 경기도 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매년 학생인권과 관련한 설문문을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면 단순한 연례행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설문문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키울 수 있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이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도모될 수 있다.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의 제작과 유포, 학생인권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교육책자의 제작 및 유포, 인권 관련 상담 및 교육청 내 학교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인권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2) 차별 금지

차별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차별유형별로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 고등학생 모두에서 학년/나이로 인한 차별,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외모/생김새로 인한 차별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이들 차별 영역들에 대해 중학생의 각각 23.9%, 19.9%, 10.5%, 9.4%가, 고등학생의 각각 45.1%, 36.7%, 14.7%, 10.9%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내놓았다. 수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년/나이, 학교성적,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의 유무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 높은 그렇다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년/나이로 인한 차별과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 응답 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편 외모/생김새로 인한 차별 경험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 간 유의한 차이 없이 약 10% 수준에서 그렇다 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외에도 중학생은 장애 4.3%, 성적지향 4.2%, 가정환경 3.5%, 종교 2.7%, 타국적/다문화 2.4%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성적지향 6.3%, 종교 5.7%, 장애 4.9%, 가정환경 4.7%, 타국적/다문화 3.1%의 순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두 학생 집단 모두에서 타국적/다문화로 인한 차별 경험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게 보고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고등학생의 성적지향이나 종교로 인한 차별 경험의 비율은 중학생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이들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을 보고한 학생의 비율이 한 자리 숫자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긴 했지만 성적지향, 종교, 장애, 가정환경(예, 저소득층가정,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행태는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특히나 학교는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현재 조사된 수준의 차별 경험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저소득층 혹은 이혼이나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되는 학생,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이 전체 학생 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현재 보고된 수준의 차별 경험은 이러한 위치에 놓인 학생들의 상당 수 혹은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 학교 관리자, 학생을 포함한 여러 학교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개인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멘토-멘티 제도, 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 제공, 옹호집단(avocate group)으로서의 활동 기회 제공 및 봉사체험을 통한 타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 높이기 활동들은 학교 주체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open-mindedness)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유형별 학생의 차별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에 대해 있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사립중학교 학생(24.2%)이 공립중학교 학생(17.2%)보다 높았다. 한편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는데, 공립중학교 학생(13.3%)이 사립중학교 학생(5.8%)보다 더 높은 비율의 있다 라는 응답을 보였다. 고등학생에서는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을 보고한 학생 비율이 일반고 학생들에서 가장 높았다(40.1%). 반면 학년/나이로 인한 차별 경험은 특목고 학생들에서 가

장 높게 보고되었다(59.9%).

### 3)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로부터의 직·간접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가 다양한 폭력위험(학생 간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학생들의 지각을 통해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29.5%, 고등학생은 27.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5%, 사립중학교는 34.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2.4%, 조례지역은 23.5%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비조례지역 보다 조례지역에서 직접체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35.1%, 고등학생은 36.3%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33.1%, 사립중학교는 38.5%로 나타났다. 직접체벌과 같이 사립중학교에서 간접체벌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40.6%, 조례지역은 30.5%로 직접체벌과 마찬가지로 조례지역에서의 간접체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30.2%, 고등학생은 37.8%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예라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공립중학교 학생과 사립중학교 학생, 그리고 네 고등학교 유형 내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5.1%,

조례지역은 33.9%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6.2%, 고등학생은 9.5%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중학교는 5.1%, 사립중학교는 8.2%로, 직접체벌, 간접체벌과 같이 사립중학교에서 교사 언어폭력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8.1%, 조례지역은 8.0%로 나타나 이들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3%, 고등학생은 33.5%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의 학생 보호 역할에 더 미흡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들로 볼 때 아직도 35%~3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 혹은 목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록 이에 조금 못 미치나 28%에 이르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경험 혹은 목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의 발생이 드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본 연구의 인식 조사 영역에서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의 입장이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41.9%)는 입장과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34.9%)는 입장으로 양분되었음은 고려할 때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관찰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사의 학생 성희롱의 문제는 신속한 대책을 요하는 영역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현장에서 교사 성희롱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학생의 비율이 8%에 이르는 확인하였다. 물론 목격도 응답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발생 빈도는 이보다 다소 낮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학생에게 줄 정신적 타격을 고려할 때 강력한 징계, 처벌 조항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찰하

고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요구된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사안을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을 지원해주는 기존의 외부 자원들(예, 인권옹호관, 학생인권 신고센터)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갈 수 있는 불이익이나 보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략(실명으로 신고 학교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에 의한 조사 및 중재)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4) 상벌점제도 운영

학교에서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학생은 67.0%, 고등학생은 69.9%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중학생은 33.0%, 고등학생은 30.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69.2%, 사립중학교는 63.3%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공립중학교는 30.8%, 사립중학교는 36.7%로 나타났다.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84.7%, 조례지역은 51.1%가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에 있어 비조례지역과 조례지역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의 비율은 23.6%, 고등학생의 비율은 30.2%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학생의 25.1%, 사립중학교 학생의 21.1%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일반고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상벌점제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74.4%, 조례지역은 69.6%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비조례지역이 조례지역 보다 조금 높게 상벌점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9%, 고등학생은

21.2%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3.2%, 조례지역은 11.5%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보다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의 발생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시험 성적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7%, 고등학생은 18.1%로 나타났다.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사실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0.7%, 고등학생은 47.7%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7%, 사립중학교는 37.3%로 나타나 사립중학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43.2%, 조례지역은 37.3%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보다 공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학생 신상이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정체감,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 여부, 생활보호 대상자)의 공개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1.9%, 고등학생은 11.2%로 대체로 응답학생들 중 11% 정도에서 개인정보의 공개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공개된 정보의 유형에 대한 조사는 이 연구에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취약한 개인정보의 공개와 유출은 개인적 고통의 유발은 물론 학교내 집단 따돌림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인식 조사 부분에서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과반수(56.1%)가 학생정보를 외부에 공개/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교/교사의 학생의 신상 및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학생 반발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학교나 교사 측에서의 이 사안에 대한 각성과 경계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학생 신상 정보의 저장과 관리, 취급에 대한 교사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학생 정보의 취급과 관리, 활용에 대한 교사 매뉴얼 제작 및 활용도 교사의 학생 정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두발 길이 및 모양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54.6%, 고등학생은 52.6%,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59.9%, 고등학생은 64.0%,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25.9%, 고등학생은 24.6%,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70.3%, 고등학생은 56.4%,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은 중학생은 75.4%, 고등학생은 61.0%,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시간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83.35, 고등학생은 76.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이 중에서 핸드폰 사용 제한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핸드폰 사용의 제한, 화장/미용제품/이용기기 반입의 제한, 치마/바지 길이나 폭의 제한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경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학교의 92.6%, 고등학교의 91.0%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6년 진행된 이 조사에서는 중학생의 54.6%, 고등학생의 52.6%가 두발 제한을 경험했다 보고하였다. 물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본 조사의 결과는 2005년도 국내 학교 실정과 비교해 볼 때 학생 인권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평가된다.

학생들의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제한율이 낮게 나타났다. 두발길이나 모양을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6.1%, 조례지역은 39.6%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5.7%, 조례지역은 58.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32.2%, 조례지역은 17.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8.7%, 조례지역은 55.4%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71.8%, 조례지역은 62.1%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84.0%, 조례지역은 74.4%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이 중에서 조례지역 대 비조례지역 간 학생 응답률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항목은 두발의 길이나 모양의 제한에서였다.

## 6)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74.9%, 고등학생은 66.1%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약서, 동의서를 강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4.4%, 고등학생은 23.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가 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타 학교유형에 비해 특목고의 학생생활 통제나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4.4%, 조례지역은 14.7%로 나타나 조례지역보다 비조례지역에서 강제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7) 학습권의 보장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9%, 고등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2.8%, 조례지역은 31.4%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8) 복지 및 건강의 권리

쉬는 시간, 점심시간 사용 제한으로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2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3.1%, 조례지역은 19.1%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침해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탈의실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49.1%, 고등학생은 27.0%로 나타났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27.7%, 고등학생은 47.6%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하였다.

고민이 있을 때 자유롭게 학교상담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8%, 고등학생은 22.3%로 나타나 고등학생에서 학교상담실への 접근가능성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가 24.1%로 학교상담실への 접근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5.7%로 상담실への 접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15.3%, 조례지역은 21.4%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금지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사, 부모 대상의 효과적인 학생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표현, 양심, 사생활 자유 등)을 위한 학생 및 교사, 부모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다양한 침해사례에 대한 확인과 현장 적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멘토-멘티 제도, 다양성에 대한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옹호집단(advocate group) 활동기회 제공 및 봉사체험을 통한 타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 높이기 활동 등을 통해 교사, 관리자, 학생을 포함한 여러 학교 주체들의 개방성(open-mindedness)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 내 차별 행위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학생회 대표와 교사, 학교관리자와의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용공간 확보 등 물리적 환경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현장에서 중학교 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 권리 관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등학교 학교 관련 주체들에게 자신들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줄 필

요가 있다. 자각(awareness)은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학생 인권이 나아갈 방향의 제시와 국내외 우수 학교 운영 사례나 정책의 소개도 개선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규칙에 대한 홍보 및 제·개정 과정에 실질적인 학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학칙이 학교 내 학생인권 실현의 근거규범으로, 민주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확인하는 실천방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칙 제·개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체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체벌 등 폭력예방을 위한 긍정적 훈육 및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폭력,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 연수 및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벌점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학교 상벌점제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2)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기준의 삭제나 수정, 3)상벌점제의 선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학칙 분석을 통해 적지 않은 학교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벌점 세부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수 또한 지나치게 많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단순하고 명료한 벌점 세부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상점을 위한 기준을 다수 포함시켜 학생들의 적절한 행동에의 동기를 높이고 벌을 상쇄하는 기준도 일부 포함시켜 상벌점제의 운영이 학생 징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학생 행동의 전환과 학생 성장에 있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상점과 벌점에 해당하는 행동의 강도에 있어서도 불공정성의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 내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

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침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 및 구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의 요약 및 결론과 제언

학생인권 관련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조사 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사 집단의 특성

가.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해서 ‘학생인권에 대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우세했다. 교사는 ‘잘 알고 있다’와 ‘알고 있는 편이다’를 합한 응답이 거의 90%에 달했다.

나.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가장 우세했다. 반면에 교사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 가장 우세했다.

다.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특히 교사는 부당하게 본다라는 응답이 세 집단 중에서도 특히 높게 나타났다.

### 2) 학부모 집단의 특성

가.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학부모는 학생인권보장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교사나 학생보다 20% 정도 더 높았다.

나.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학부모가 학생이나

교사보다 20% 이상 더 높은 비율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응답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와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은 학생이나 교사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았다.

다. 반면에 학생의 이성교제 규제, 두발 규제, 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 ‘학교가 단독으로 정하’거나,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가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학부모가 이성교제 규제, 두발규제, 복장규제, 소지품 검사 등을 학생 권리침해로 인식하기보다는 학교 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3) 학생 대 교사-학부모

가.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 두발 규제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높았던 데에 비해 학부모, 교사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나.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 교내 CCTV 설치에 대하여도 학생은 ‘전교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가장 높았고,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

다. 학생은 ‘집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학부모나 교사는 ‘수업권 침해나 학생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를 지지한 입장이 가장 우세했다.

### 4) 체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가. 체벌에 대하여 교사나 학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입장이 가장 높았지만, 오히려 학생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

나. 체벌에 대한 견해는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적 훈육(사랑의 때)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등의 상반된 입장들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중, 고등학생 간 차이

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도에서도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에 가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에서도 고등학생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비율이 중학생보다 낮았다.

나.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들, 즉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 학교의 두발규제에 대해, 학교의 복장 규제에 대해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고등학생의 경우가 더 높았다.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고등학생이 더 높았고,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고등학생이 더 높았다.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 대 교사-학부모 간 인식 차의 이해와 극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대 교사-학부모 간 상당한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이성교제 규제, 두발 규제, 복장 규제, 교내 CCTV 설치 등에 관련해서 학교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또는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를 원했으나, 교사나 부모는 학부모나 교사들 자신이 결정에 개입하거나 학교가 통제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교내, 외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지속

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 2)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 차의 이해와 극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 등에 관련해서 학생과 교사-학부모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학생은 52%가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 등 교내 학생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서 학부모는 31%, 교사는 16%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21% 혹은 36%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과 방안들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관련 문제는 교내외 갈등요소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 3) 체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의 이해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체벌에 대한 견해에서 특히 상반된 여러 입장들에 대한 지지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일관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 내에서도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적 훈육(사랑의 때)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등의 상반된 입장들이 높은 비율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체벌에 대한 문제는 아직 다양한 의견이 혼재된 양상이어서, 이에 대한 토론과 논의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가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학부모 집단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부모가 특히 학생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높은 의지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반면에 이성교제 규제, 두발규제, 복장규제, 소지품 검사 등을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이를 학교의 권한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학부모가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한 축이며 잠재력인 동

시에, 아직은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확장해가야 할 필요성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학칙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확인하고, 즉시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인권친화 학칙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이나 징계 사실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자치활동이나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차별 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또한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행사와 관련해서는 교사나 학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두는 등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잘못된 규정으로 제한되고 있다.

### 3. 학칙분석 결과에 기초한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앞서 열거한 변화하는 학교 및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학생인권보장 항목의 추가 필요성,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의 학생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 파악의 중요성, 학생 인권 관련 학교규칙(학칙) 분석 연구의 부족,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 간 학교 규제 권한 허용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측면을 전달하는 연구를 설계,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향후 중등학교의 인권 관점에서의 학칙 구성과 학생인권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의 인권 증진 관련 정책권고의 기초자료로 그리고 각급학교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동과 학생은 기본권의 주체임이 명확하고 성인보다 사회적, 국가적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부모의 친권에 종속된 자, 아직 미성숙의 사람으로서의 미성년자, 스스로 주체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동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비단 도덕에 의해서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성문법에

도 광범위하게 걸쳐있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학교규칙을 통하여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때로는 끔찍한 형태로 존재해왔다는 것이 과거의 학교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이제 학교규칙이 학생의 기본권 침해의 구습을 벗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권이 담긴 권리장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136개 학교의 학칙 점검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칙의 제정 목적이 단순히 학생의 학교생활만을 통제·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은 전체 136개 학교 중 30여 곳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칙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총론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 학칙은 전체 136개 학교 중 27곳에 불과하다. 학칙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며, 교육기본법의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고, 학생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인권의 온전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하는 기본전제이자, 그 자체가 인권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는 조항을 갖고 있는 학칙이 27곳에 이른다. 여전히 성적이나 징계 사실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자치활동이나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넷째, 학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 113곳,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곳이 126곳에 이른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잘못된 규정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 행사와 관련해서는 교사나 학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두는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섯째, 학칙의 상·벌점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에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 사용, 과도한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이 114곳에 이른다. 학생생활지도는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같은 세부기준은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선도로 이어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세부기준은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에게 잘못된 인권 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학칙이 학교 내 학생인권 실현의 근거규범으로, 민주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확인하는 실천방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인권침해 요소나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규칙은 자치법으로서 상위법의 변화, 학생, 교사, 학부모의 문화의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바람직한 학교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지정 토론

**서울특별시 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경기도 교육청 황태륜** 학생인권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강민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고유경** 수석부회장 (참교육학부모회)

**구정화**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언 -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잘 보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제언 중 학교규정이 학교 내 학생인권 실현의 근거규범으로 상위법의 변화, 학생, 교사, 학부모의 문화의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2015년 연구용역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의 학교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예시(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 드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점검하고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첫째,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흐름에 따른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고 둘째,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해석 및 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의 최소화 그리고 방만하게 산재해 있던 각종 생활규정을 통합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학교 규칙이라고 하면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즉 학칙 및 각종 규정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생활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학습권의 보호, 자치활동의 원동력과 법규적 성격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교직원 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지원과 소통과 공감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근거가 학교생활규정에 있는가?
  - 예) 학생 포상 및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규정, 두발 및 복장 등 용모규정, 상벌점 규정 및 이에 따른 징계규정,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등
  
- 학칙 제·개정 절차가 합리적인가?
  
-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하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
  - 단계별 지도 및 징계.
  -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 확보 필요.
  - 수차례 지도하고 경고한 내용 확보 필요.
  
-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이 있는가?
  - 총칙, 학생회, 대의원회, 학생위원회,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규정 등 학생 인권 및 자율성, 안전 등에 침해나 저해 요인은 없는가?
  - 학생 징계위주의 생활규정은 아닌가?

저희 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에 예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사례]

**1.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내의 봉사 : 최대 4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 : 최대 7일 56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학교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퇴학처분 :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의무교육과정은 제외한다.

**2.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징계의 기준 마련**

- 각 위원회(선도위)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중 처벌 이라는 표현 완화)
-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경우 벌점은 교육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해당 행위가 징계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징계할 수 있다.

**3.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학교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4.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의 발의)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5. 학생 자치활동 보장

(자격제한 금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 교 학생회장단 및 학급회장단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 (자격상실)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학교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저희 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인권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부분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사점과 제언은 저희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연구용역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유권부문의 학생인권증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로 볼 때 용의복장에 대한 부적정적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였고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한 2015년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특히 복장과 용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만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이런 학생과의 갈등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교사나 개별 학교에 맡겨두지 말고 정책적으로 복장 규제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거나 관련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적 학생지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체벌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한 학생들이 20% 정도 있으며, 특히 중

학교의 경우 체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들의 비율이 30% 이상 되었습니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감정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의 직무피로도가 학생인권요소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체벌 경험에 대한 설문 의 경우, 최근 일 년 동안 체벌을 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직무피로도가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사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학생인권요소 및 교사관련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학생인권요소는 학생인권조례인식 및 조례를 통한 학생인권보장, 학생들의 반성문강요 등이 있으며, 학교 내 여러 폭력 요소들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의 상관성은 학교운영에서의 교사들의 참여와 같은 교사관련 요소와 더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구용역보고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실태조사 최종보고서」(인권정책연구소, 2015.12.)

따라서 체벌과 관련하여, 교사의 피로감 해소방안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피로감은 학생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벌빈도가 높게 나타난 학교에서 교사의 피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벌을 금지하면서 도입된 상벌점제는 그 자체가 반인권적 통제 수단일 뿐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대체할 구체적인 사례나 운영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과 운영 시스템을 구성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사인권역량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의 경우, 자기 능력이나 노력에 비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나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느끼는 등 자기업무에 대한 성취감이나 교육의 즐거움을 잃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현상

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았으며, 일반고등학교 교사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가 낮습니다. 학생의 학교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제기하는 불만의 대부분은 개성과 개인적 활동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학교가 자기 성장이나 진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학생이나 교사 모두가 학교에서의 자기 성장이나 직업적 성취라는 점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인권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또한 학생인권 증진의 주체로 초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사들의 성장과 인권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제도의 확산입니다. 학생인권제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 문화의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이 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인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적어,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학생침해 인권구제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인식 확산 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인권친화적 학칙개정 토론회

경기도 교육청    황태륜 학생인권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 I. 학생인권보장의 당위성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볼 때, 학생인권은 이상적인 가치나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니라, 대한민국 실정법에서 학교의 장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저는 학생인권친화적 학칙개정에 있어서 학생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절차에서의 권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II. 학생자치의 실질적 보장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7조 제2항에서는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1항에서는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서는 위와 같이 학생의 자치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위 규범들이 잘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각 권역별 학생참여위원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각 학생참여위원들이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학생인권옹호관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자리입니다. 학생참여위원회에서 각 학교의 학생회 등 자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자치기구 회의 자체가 개최되지 않는 학교도 있었고, 정기적으로 개최는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관리자에게 닿지 않거나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자치기구 스스로 학생들의 의견을 차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범죄행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치가 매우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회가 교사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등 다른 학교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의 협의체들과 동렬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학칙에서 학생의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학칙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Ⅲ.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 내 존재하는 여러 기구들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외면되고 있고,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을 예로 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할 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상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학교폭력사실을 일반인이 인지하였든 교원이 인지하였든 모두 학교장에게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자치위원회와 전담기구 모두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심의를 하는 기구이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생활 인권 부장선생님 등은 자치위원회의 위원과 전담기구의 구성원 모두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사안에 관하여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당사자들이 이중적 지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나아가 각각 어떠한 입장에서 학교폭력사안을 대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실제로 전담기구의 장인 교감선생님이 자치위원회의 진행을 주도하고, 학생에 대한 심문하는 듯한 태도로 다른 자치위원들의 객관적인 심의와 결정을 어렵게 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각 절차에 있어서 학생인권이 고려되고 존중되는 방향으로 학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실태조사 문항 구성에 대한 평가

강민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학생인권 실태와 인식을 다방면에 걸쳐 조사하였다는 점이 긍정적. 그러나 몇 가지 문항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학생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실태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서술하고자 함.
- (4번 문항)“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문항의 경우,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운영하고 있다면)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됩니까?”라는 질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위 질문은 주의 깊게 읽지 않거나 문해력이 부족한 응답자의 경우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오해될 여지가 큼.

실제로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만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학생에게 없는 경우가 많음. 학교신문을 발행하는 학생자치단위가 있다 하더라도 ‘지도교사’가 단순 지원이 아닌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음. 학교홈페이지 역시 학생들의 의견제시 및 소통의 장이라기보다 학교-학부모 간 전달매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가의 척도는 학생이 학교의 방침이나 학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그리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공식적인 학교 매체가 아닌 방식으로 의견 표명을 했을 때 그것이 처벌되거나 제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음.

- (9번 문항) 9번 문항은 ‘자유롭게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음. 학생회 활동에 외부적 제한이나 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유효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 외부적 제한이나 개입이 명시적으로는 없더라도 학생회가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대의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필요함. ‘자유롭게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가’와 ‘당신의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변하는가’의 질문은 이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질문임. 많은 학생회가 학생의 대의기구라기보다는 교사의 심부름꾼, 선도부, 엘리트 학생집단의 성격을 띠고 운영된 맥락과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 생활로 인해 학생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학생회가 학생을 대변하는가는 당연히 전제된 사항이 아니라 다시금 확인해야 할 사항임.
- (10번 문항과 15번 문항) 10번 문항은 어떤 사유를 근거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항이며, 15번 문항은 성희롱 경험에 대한 문항임. 두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파악하기 힘들 것으로 추측되면서도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교사의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 ‘혐오발언’일 것으로 사료됨. 차별은 통상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성희롱은 구체적인 피해당사자에게 성욕구를 드러내는 발언으로 한정되어 이해될 여지가 크기 때문임.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만 성희롱이라고 명명하기도 애매하다고 느끼는 발언 중에는 “여자는~” 등의 여성에 대한 비하 및 혐오발언, 혹은 여성, 여성 신체부위에 대한 비하 및 혐오가 담긴 성적 발화임.
- (20-2번 문항) “학교가 교복 외의 점퍼 착용을 제한합니까?” 문항 자체는 문제없음. 그러나 현장에서 학생들로부터 복장 관련하여 가장 많이 호소 받는 부분 중 하나는 학교는 교복 외의 점퍼(겉옷) 착용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착용감이 불편하고 보온성도 없는) 교복 마이를 입고 그 위에 덧입도록 한다는 것임. 교복 마이의 보온 기능은 미약하기 때문에 교복 상의와 겉옷 사이에 굳이 불편한 마이를 입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다수의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문항이 있다면 더 좋을 것.
- (18, 19번 문항과 25번 문항) 18번 문항은 학교가 학생의 시험성적을 공개 게시하는지를 묻는 문항이고, 19번 문항은 특정 학교 입학에 공개하는가를 묻는 문항임. 25번 문

항은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가를 묻는 문항인데, 시험 성적이나 특정 학교 입학 여부 또한 개인정보임. 18번과 19번 문항에서의 ‘공개한다’인 응답 비율이 25번 문항에 비해 높는데, 특정 학교 입학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해도 시험성적은 일괄적으로 게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것임.

## 제언

### 1) 민주주의(토론과 의견 수렴)의 실현과 제시된 인권 기준 준수의 균형

‘토론을 거쳐’의견 수렴을 하여 결정했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하여 만든 학칙이라는 변명이 학교가 학생인권침해적인 학칙을 정당화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있다. 이를테면 두발규제에 다수의 학생이 찬성을 하여 규제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규제를 원하지 않았던 소수 학생의 ‘자신의 머리 모양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신체의 자유는 침해되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라고 해서 모두 학생인권 옹호자인 것은 아니고, 이는 본 조사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학교 내 의견 수렴과 토론 절차는 물론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다수가 합의했다고 해서 침해될 수 없는 학생인권의 기준선을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적으로 학칙은 학교장 자율로 맡겨져 있고, 침해되어서 안 될 학생인권의 기준선은 직접체벌의 금지 정도로만 법제화되어 있어(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며 강제력이 부족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도 국민이기에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인간이기에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중요한 사안(예를 들어 야간자율학습의 참여 여부)의 결정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학칙,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학칙은 개별 학교 안의 대다수가 옹호한다고 해서 정당

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적이거나 상위법을 위반하는 학칙에 대해 효력정지, 처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기구, 절차 마련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다면 본 조사결과 19.5%의 중학생과 26.8%의 고등학생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 또는 활동제한’의 경우 토론이나 의견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폐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체벌이나 개인정보 공개 등도 마찬가지이다.

## 2) 학칙 제정 목표는 학생인권 보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목표가 국민의 권리 보장인 것처럼, 학칙의 제정 목표도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장이어야 한다. 그 의미도 불명확한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명문학교’ 되기, 학업 성적 잘 내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기에 학칙은 학생만 규제해서는 안 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 어떠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학생에 대한 내용의 학칙 제/개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면, 학생 역시 교사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교사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학칙 제/개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 당사자에 대한 규칙은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보다 학생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학칙 중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의결권한을 가진 학생 대의자의 수가 학부모와 교사를 합한 것과 동등하거나 더 많아야 한다. 정규교과 외 수업 및 자율학습 참여의 경우도 교사나 학교 측에서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학부모가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이 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 학부모가 동의해야 하는 것은 학생이 참여의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동의(수업료를 납부하겠다는 동의 등)이지, 학생이 불참하겠다고 하는데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만 제시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다를 때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해야한다는 원칙이 없다.

### 3) 학칙 제/개정 과정은 민주적으로 열려 있어야

많은 학교에서 학칙을 만들고 바꾸는 과정이 학생에게 열려 있지 않고,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학생 전체가 아닌 학생회 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의 의견만 형식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 본 조사에서 학생 전체에게 학칙 제/개정에 대한 의사를 수렴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는 34.9%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학교는 설문지, 가정통신문, 학생 자치회의 등을 통해 학칙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현재 학칙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학교 정해두고 그 기간 외에는 의견을 받지 않거나, 학칙 개정안을 쓰는 절차가 까다로워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칙 개정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학기 당 1회 정도로 정기적인 학칙 제/개정 시기를 정해두되 그 기간 외에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초등학생도 쉽게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는 간소화하여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쉽게 안내해야 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적으로 학칙 제/개정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칙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학생의 생활과 용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칙임에도, 학칙의 내용을 본 적이 없다는 학생 응답이 15.3%나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률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대다수 국민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공권력 남용을 인지하거나 억제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학교 학칙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홈페이지에조차 학칙을 공개해두지 않는 학교들이 많고(학교알리미에도 업로드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음) 학생들도 학칙의 내용은 잘 모르고 그저 교사가 하지 말라니까 학칙에 어긋나보다 하고 짐작하는 경우, 혹은 ‘교사의 말’이 학칙으로 등치되어 인식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 모든 학생들이 학칙의 내용을 알 수 있게 공개하고,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학칙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학칙은 초등학교생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4)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학칙의 폐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범위와 한계가 특정되지 않은 학칙들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악법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교사지시불이행’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명시한 학칙이 다

수 학칙에 존재한다. 이 경우 무엇에 근거한 교사지시인지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어떤 조건에서의 불이행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한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사의 모든 종류의 지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적인 공간에서 있을 수 없는 규칙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모든 학칙, 학칙의 제/개정 과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색을 하지 못하는 학칙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반대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교사들은 연색에 대해 교사지시불이행으로 벌점을 주겠다고 하면 학칙의 제정과 개정이 소용이 없게 된다. 학칙에 명시된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벌을 주고, 같은 사안에 대해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벌을 줄 수도 있어 이중처벌도 가능한 것도 문제점이다.

그 외에도 ‘불건전한 이성교제’, ‘풍기문란’, ‘학생 신분(본분)에 맞지 않는 행위’ ‘예의 없는 행동’ 등 애매모호한 단어들 이 대다수 학칙에 대거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호한 규정은 교사에게 ‘찍힌 학생’을 처벌하고 쫓아내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교육청 등 상급단위에서 학칙 제/개정을 권고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컨설팅을 할 때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 [참고자료]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발표회 자료집

〈공모 사례로 본 현 학칙의 문제점〉, 조영선

〈현 학칙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공현

## 학칙에 학생인권의 목록이 담기기를 바란다

고유경 수석부회장 (참교육학부모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실태를 조사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생인권을 말하는 것이 불온시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곳이 많다. 또 학교의 부당한 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 참학의 학부모상담실이나 너머 운동본부의 학생인권상담소 넘어에 상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학교내 인권 상황은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그나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라면 인권침해사안으로 민원을 넣고 그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의 의지를 따지거나 압박하여 학생의 권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수 있으나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교육청의 인권의식을 기대할 수 없어 문제해결이 더 어렵다.

학생들은 차별과 개성실현과 사생활의 자유에 가장 민감하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는 학생의 개성실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하기 보다는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학칙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두발과 복장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학칙에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한다.

학칙에 학생의 권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수준으로 명시할 수 있다면, 학칙이 학생을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정되고 시행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내용이 담긴 학칙을 가진 학교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하니 우선 학칙의 기본 정신, 제정 취지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학부모의 인권의식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보면 학부모들은 체벌이나 교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보호, 참여권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학생의 두발 복장 규제나 자치권을 실현하는데 학부모의 의견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자신의 자녀가 체벌이나 교사의 부당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개성실현이나 사생활자유를 침해당했을 때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학부모가 많다. 이렇게 볼 때 학부모들 자신이 인권에 대해 알고 있고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학부모가 인권교육을 받고 좀더 폭넓은 인권의식을 가져야 학교가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몇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까한다.

1. 아직도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보장의 의지를 천명할 것을 권고하기를 바란다.
2. 학칙이 학생을 규제하기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적으로 학생이 보장받을 권리목록을 명시하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을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권하기를 바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을 옹호해 주기를 바란다.

##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토론

구정화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 1. 들어가며

이 연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중간보고를 하는 것까지 살펴본 토론자로서는, 연구진이 중간보고에서 나왔던 다양한 문제 제기 부분을 상당부분 해결하고 완결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진의 노력이 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의견을 짧은 시간 안에 반영하여 좋은 연구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이 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이 연구의 결과 제시에서 너무 단순하게,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의 내용이 매우 방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10여 년 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조사 보고서와 일정 항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변화 특성을 파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나 인식 조사의 내용을 단순 요약 상태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더 많이 논의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논의거리 등을 추출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의문이나 고려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분석이나 인권의 유형 등 다른 분석은 다른 전문가들이 충분히 하실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2. 연구결과 및 분석과 관련한 논의사항

첫째,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분석과 결과에서의 비교 등이 없는데, 성별 분석을 안 한 이유가 있는지요?

둘째, 실태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중학생이 인권 교육 경험도 많고, 인권에 대한 관심도 많으며, 의사 표현의 기회 제공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대의원회 등의 개최도 더 많은 학교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도 체벌 등 학생 통제의 경우에서만 고등학생에 비해 그 경험 비율이 높고, 대부분 항목에서 고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이 더 많이 인권보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회 활동 제한도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대체로 고등학교 시기에 차별 경험도 여러 항목에서 중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했거나 관찰한 것으로 나타나며, 교사의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학습권 침해,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성적 공개, 특정학교 입학 사항 공개 등에서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각 항목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징을 비교하기 보다는 결론 등에서 전반적으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문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분석(\* 아마도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등이 더 많이 강조되는 현실 때문일 것 같습니다.)을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인권 정책이나 인권교육의 방향 등을 달리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학생 인권 관련 인식 측면에서, 특정 항목이 인권침해라고 보는 의견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나타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  
 학생) 학부모= 교사 : 이성교제 규제, 학생 소지품 검사,  
 학생) 학부모) 교사: 두발 규제, 학생의 복장 규제, 학교 내 CCTV 설치, 교내 학생집회 규제  
 교사) 학생=()학부모 : 야간학습 보충수업 참여 강제, 학생의 체벌  
 학부모=교사) 학생 :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수강 강제  
 학부모)학생=교사: 인권 침해 시 반응이나 학생 인권의 보장에 대한 중요성 인식

->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보임(제 분석은 상당부분 편의상 한 것이기에 엄밀한 분석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며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좀 더 유형화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 인식의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72쪽 이후의 논의와 관련하여)

넷째, 이 연구가 실태 조사와 인식 조사로 되어 있으며, 학교 규칙의 분석은 연구진이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수정 의견이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60쪽부터 63쪽까지 분석표에서 조사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고 있어서 연구진이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가 마치 응답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정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진이 학교규칙을 분석한 과정을 서술하고, 분석 항목의 경우에도 질문정보다는 다른 방식의 서술을 통해 분석 항목이라는 느낌이 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기타 사항으로 일부 개념이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83쪽의 “따라서 학교규칙이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의 법리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아울러 학교규칙에서 기본권 보장의 독소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제거한다면 학교규칙이 학생들에게 규범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경우는 학교 규칙으로 통일하는 등 개념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연구진이 가장 면밀하게 자료를 파악하였을 터인데, 짧은 시간 허둥대며 자료를 보고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구진의 노고에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 인 쇄 | 2016년 12월

| 발 행 | 2016년 12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641 | F A X | (02) 2125-0929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978-89-6114-523-7 9337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